

원자력 수출입 통제 이행 실무자를 위한 수출입 통제 매뉴얼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 실무자를 위한 수출입통제매뉴얼

“원자력 수출입통제 이행 실무자를 위한 수출입통제 매뉴얼”을 발간하며

일본의 반도체 생산부품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간 무역 분쟁,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공급 차단 등 최근 세계무역 시장에서 수출통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가 강력한 무역제재 및 경제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수출입자는 국내 수출입통제 제도를 숙지하여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원자력 수출입통제’란 핵물질과 핵물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 등이 우려국가나 테러조직에 의해 대량파괴무기(WMD)인 핵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제적·국가적 조치입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결, 다자간 원자력수출통제체제(NSG)구축, UN안보리결의(UNSCR1540 등) 채택 등을 통해 원자력전용품목 및 국제규제물자의 국가 간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NSG에 가입하고 관련 수출통제지침을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원자력 수출입통제를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e-mail, 전화, 팩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이전이 용이해지고 인력의 국제기술교류(예: 국제공동연구, 재직자 해외파견, 퇴직자 해외취업 등)가 활성화되면서 전략기술의 무허가수출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대외무역법을 개정을 통해 국내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련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국제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매뉴얼은 수출입제도 이행 ‘실무자’를 위한 참고 매뉴얼로서 전반적인 수출입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원자력 관련 산·학·연 관계자는 본 매뉴얼을 잘 활용하여 국내 수출입통제 제도 및 국제 수출통제 질서를 잘 준수하고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교육수강을 원하시면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의 상담게시판에 문의 바랍니다.

1장. 원자력 수출입통제 소개

1.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06
2.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07
3. 국내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	08

3장. 핵물질 수출입통제 제도

1. 개요	24
2.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26
2.1.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개념	26
2.2.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절차	26
3.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27
3.1.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개념	27
3.2.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절차	27
3.3.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면제	29

2장.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제도

1. 개요	12
2. 전문판정	15
2.1. 전문판정 개념	15
2.2. 전문판정 절차	15
3. 수출허가	16
3.1. 허가 개념	16
3.2. 수출허가 절차	18
3.3. 수출허가 예외·면제	21
3.4. 수출허가 위반 시 처벌	22

4장.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1. 개요	32
1.1.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개념	32
1.2.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의미	32
1.3.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33
2.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입 의무	34
2.1. 협정대상품목	34
2.2. 협정대상품목 수출입시 이행절차	35

5장. 원자력전용기술 수출통제

1. 개요	42
1.1. 전략기술 통제 배경	42
1.2. 전략기술 통제 의의	42
2. 국내 원자력전용기술 수출통제	43
2.1. 원자력전용기술	43
2.2. 기술이전 범위	44
2.3. 기술이전 방식	45
3. 원자력전용기술 수출허가	47
3.1.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47
3.2. 수출허가 절차	48
3.3. 정부보증 면제	49
3.4. 수출허가 예외·면제	50

6장.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1. NEPS 소개	52
1.1. NEPS 포털	53
1.2. NEPS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54
2. 주요 민원업무 처리절차	55
2.1. 전문판정	55
2.2. 수출허가	59
2.3. 핵물질 수출입	64
2.4. 민원발급	69
2.5. 민원상담	70

7장. Q&A

1.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	75
1.1. 원자력전용품목	75
1.2. 전문판정	78
1.3. 수출허가	79
1.4. 핵물질수출입	82
1.5.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84
2. 기술이전 사례	85
2.1. 외국인 채용	85
2.2. 해외 출장	86
2.3. 학회 참석	87
2.4. 계약	88
2.5. 인터넷 기반	90
2.6. 외국인 교육	91

8장. 부록

1. 용어정리	94
2. 원자력전용품목 세부품목	95
3. 수출허가 필요 체크리스트	99



1장 원자력 수출입통제 소개

-
1.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2.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3. 국내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

1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등),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 수출통제란 수출품목(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우려국가 및 테러 조직에 의해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정부가 사전 검토하여 수출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량파괴무기(WMD) 수출통제(Export Control)

국제조약 및 UN 결의에 의한 통제

- 핵비확산조약(NPT)**
 - 핵무기 비확산, 핵군축, 평화적 이용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전시 생물무기와 사용 금지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전시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 무기거래조약(ATT)**
 - 재래식무기의 거래 규제에 관한 국제 기준확립 및 불법거래 방지
- UN안전보장이사회 1540**
 - UN 회원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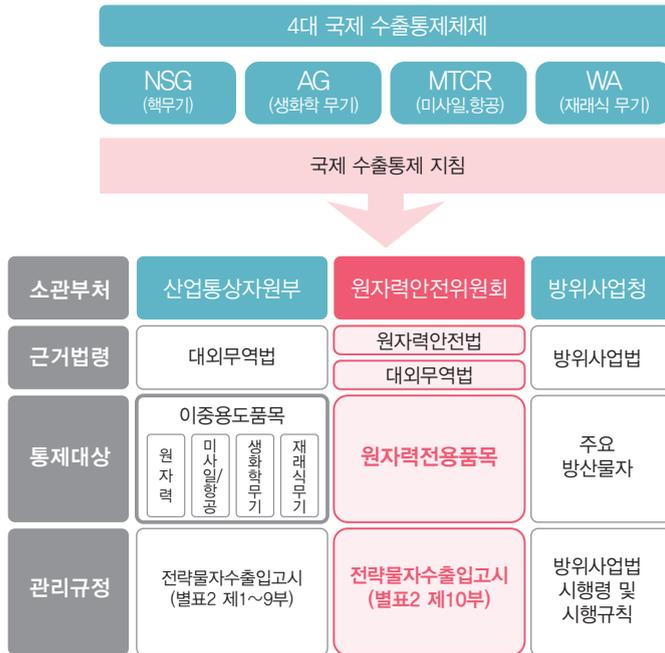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핵무기 관련 원자력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 등
- 호주그룹(AG)**
 - 화학 및 생물무기, 이중용도품목 등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미사일 체계 완성품,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
- 바세나르 체제(WA)**
 - 재래식무기 및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 등

- 국제사회는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비확산조약을 체결하고 UN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근거 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여 통제품목 및 통제지침을 수립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법에 반영하여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국제적 차원의 수출통제가 필요한 것은 WMD 개발이 사실상 한 국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로 국가간 교역 및 협력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2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 우리나라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NSG, AG, MTCR, WA)에 모두 가입하였으며 각 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 및 지침을 국내법(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등)에 반영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수출통제품목인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이중용도품목,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으로 구분되며,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에서 수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처별 전략물자 세부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 및 3)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SG 지침에 근거한 원자력 관련 전략물자는 '원자력전용품목' 과 '이중용도품목' 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품목, 담당부처 및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이 상이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 대상은 원자력전용품목이며, 본 매뉴얼 2장에서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Q&A

Q. 원자력전용 품목과 이중용도품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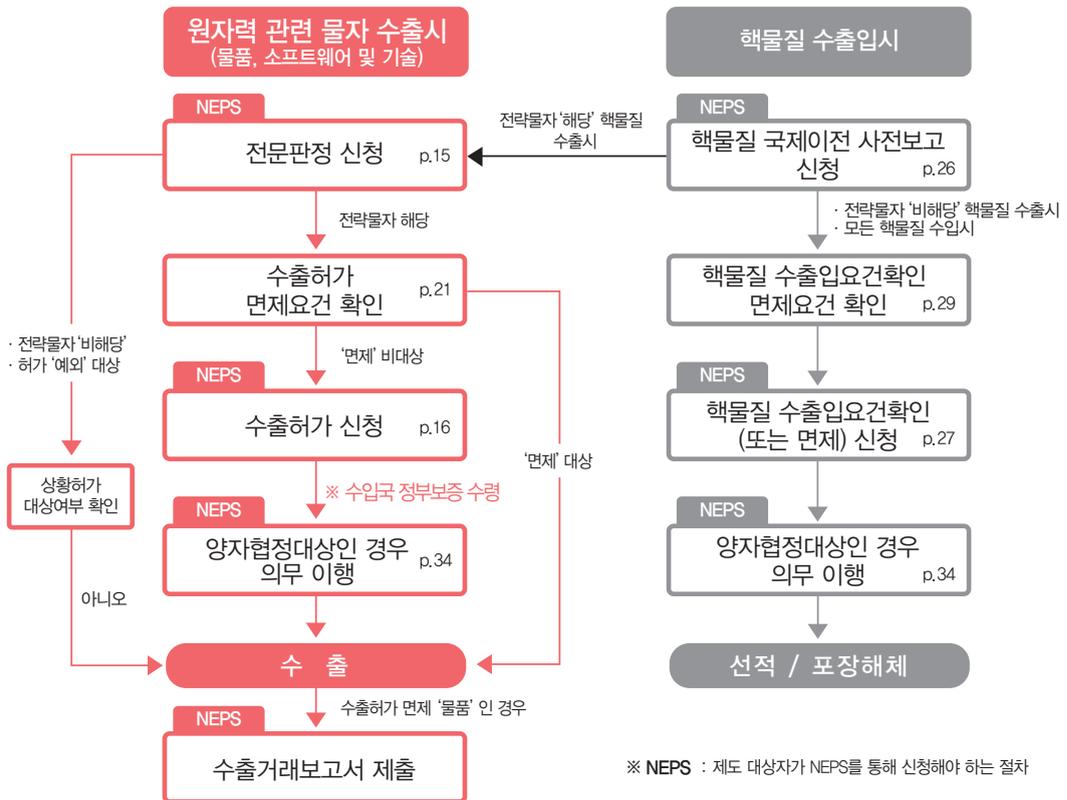
☞ p.75

3 국내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

-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란 핵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입을 정부가 사전 검토하여 허가·승인하는 것입니다.
- 국내 원자력수출입통제 대상에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근거한 '원자력전용품목' 과 원자력 관련 조약, 협정 등의 국제약속에서 근거한 '국제규제물자'가 있습니다. 두 물자를 규정하는 근간은 다르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 원자력전용품목 및 국제규제물자 수출입 시 준수해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절차마다 상세설명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Q. 원자력전용품목과 국제규제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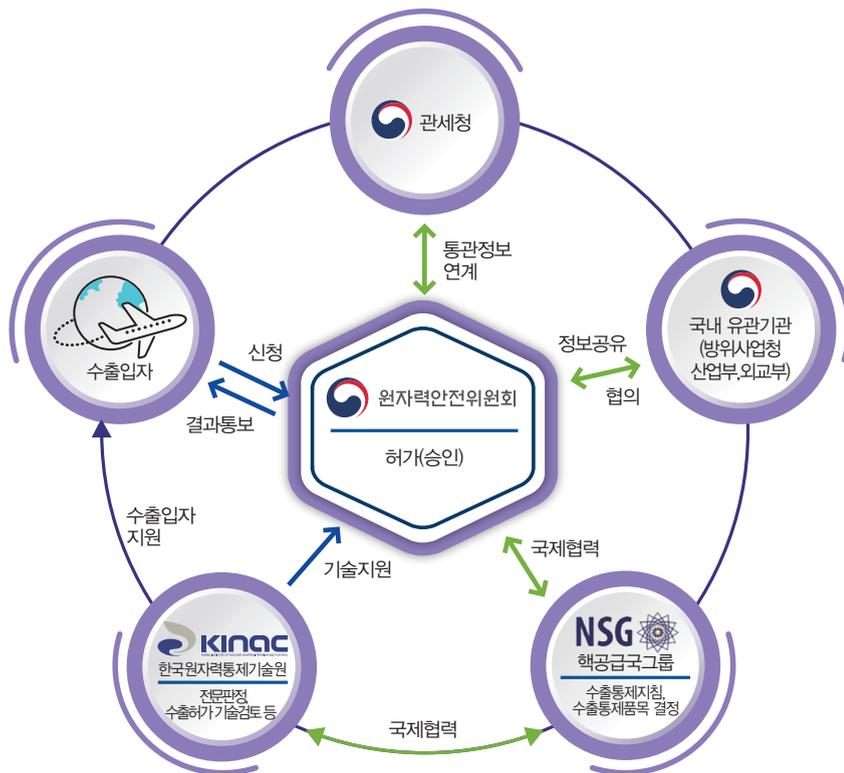


- 국내 원자력수출입통제 제도 이행을 위한 모든 민원업무는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NEPS(www.neps.go.kr)를 통해 처리됩니다.

-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목) 및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 담당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 2020년 6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문판정* 관련 전체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판정'이란 수출품목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이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수출입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및 외교부 등 국내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그룹(NSG)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2장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 제도

1. 개요

2. 전문판정

- 2.1. 전문판정 개념
- 2.2. 전문판정 절차

3. 수출허가

- 3.1. 허가 개념
- 3.2. 수출허가 절차
- 3.3. 수출허가 예외·면제
- 3.4. 수출허가 위반 시 처벌

1 개요

- 원자력전용품목이란 핵물질 및 핵연료주기 관련 시설, 장비, 물질 등의 '물품'과 이러한 물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합니다.
- 이 때,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채광부터 정련, 변환, 농축, 가공, 발전, 재처리까지 모든 공정을 포함합니다.

◎ 핵연료 주기



Q&A

Q. 수출통제식별번호 (ECCN)란 무엇인가요?
 ☞ p.77

- 원자력전용품목의 세부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5개의 범주(0A~0E)로 분류됩니다.
-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세부 품목은 **수출통제식별번호(ECCN)**로 구분합니다.

범주	항목	내용
0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원자로, 원자로용기, 핵연료교환기, 원자로제어봉 및 장비, 원자로압력관, 핵연료 피복관, 1차 냉각재용 펌프 혹은 순환기, 원자로내부구조물, 열교환기, 중성자 검출기 등
0B	시험, 검사 및 생산 장비	가스원심분리공장, 가스확산분리공장, 플라즈마 분리 공장, 전자기분리공장 등
0C	물질	특수 핵분열성물질 (플루토늄, 우라늄 등) 중수소 및 중수, 원자로급 흑연 등
0D	소프트웨어	상기 품목의 생산, 설계,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전산 프로그램
0E	기술	상기 품목의 설계, 건설, 제조, 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 특히 '기술'의 경우 이전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이전행위 자체가 통제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 5장의 '원자력전용기술 이전의 14가지 유형(☞ p.46)'을 꼭 읽어보고 향후 기술 이전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통제품목예시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

(출처: 한전(KPS))



<핵연료 집합체>

(출처: 한전원자력연료)



<중기발생기>

(출처: 두산중공업)



<노심 관련 코드>



<원자로급 흑연>



(출처: DEAN CALMA, Wikimedia Commons)

<우라늄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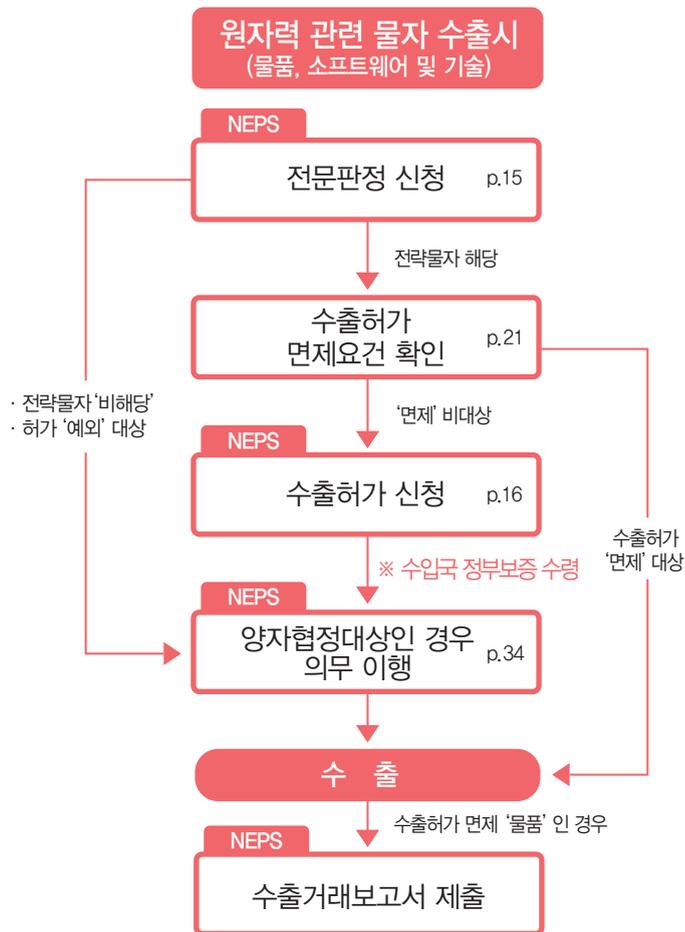


<원자로 설계도면>

Q&A

Q.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요?
 ☞ p.77

-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 19조에 따라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출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판정, 정부보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수출 품목이 양자 원자력협력협정 대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협정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자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 매뉴얼 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도 대상자가 NEPS 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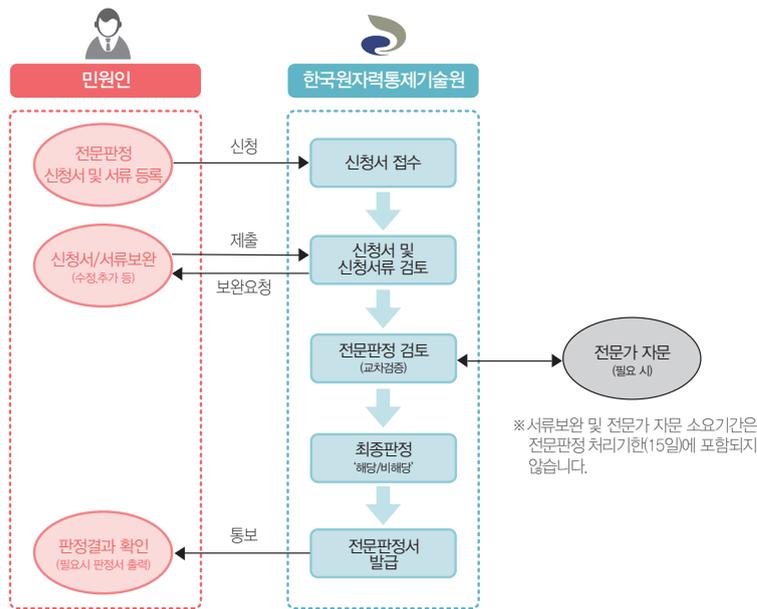
2 전문판정

2.1 전문판정 개념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담당기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전문판정에서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 원자력전용품목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 전문판정 절차



- 신청서류: 전문판정 신청서,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1부 (ex. 매뉴얼,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 신청방법: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통한 신청 (☞ p.55 참고)
- 소요기간: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년

Q&A

Q.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어디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 p.78

Q. 전문판정 결과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모두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어떡하죠?

☞ p.78

Q. '해당' 판정을 받은 기술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본의 경우, 다시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p.78

Q. '비해당' 판정을 받은 기술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본의 경우, 다시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p.78

※ 서류보완 및 전문가 자문 소요기간은 전문판정 처리기한(15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유효기간 내 전문판정 결과를 여러번 사용 가능한가요?

☞ p.78

3 수출허가

3.1 허가 개념

- 전문판정 결과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 1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원자력전용품목의 국외 이전(수출, 경유, 환적, 중개 등)과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중개허가가 있습니다.

◎ 수출허가

- 수출허가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전략물자일 경우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전략물자 중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출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로 구분됩니다.



개별수출허가	개별 신청건에 대해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수출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1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포괄수출허가	수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품목, 최종사용자,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수출하도록 허가 받는 제도입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은 포괄수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원자력플랜트 기술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 수출사업에 대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원자력플랜트란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 주기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Q&A

◎ 상황허가

- 전략물자가 아닌 물자 중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 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HS번호 분류상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하고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이, 그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 등을 수출하고자 할 때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 ※12가지 의심징후 확인(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을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 ※우려거래자 확인은 Yestrade(www.yestrade.go.kr)에서 확인 가능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 ※별표2의2에 해당하는 품목의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함
- 그 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Q. 상황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p.80

-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원자력 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의 상담게시판을 통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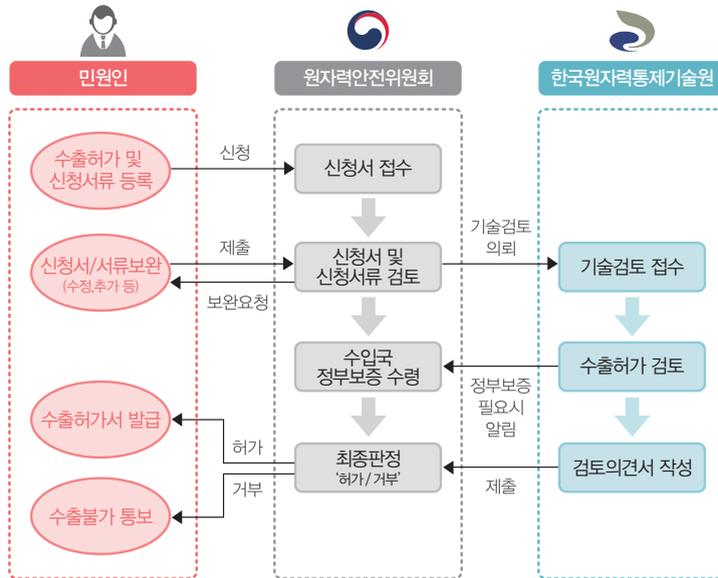
◎ 중개허가

-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목) 또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 등을 제3국에서 또다른 제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유·무상 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경유·환적허가

-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목) 또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3.2 수출허가 절차



- 신청서류: 허가의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류 상이 (☞ p.20 참고)
- 신청방법: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통한 신청 (☞ p.59 참고)
- 소요기간
 - 법적 소요기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 (기술심사 소요기간 제외)
 - 실제 소요기간: 행정 처리기간 외 기술심사 및 수입국 정부보증 수령 등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상 소요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품목을 1회 수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 기술의 개별수출허가 및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경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또는 사업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Q&A

Q. 유효기간 내 발급받은 수출허가를 여러번 사용 가능한가요?
☞ p.10

Q.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수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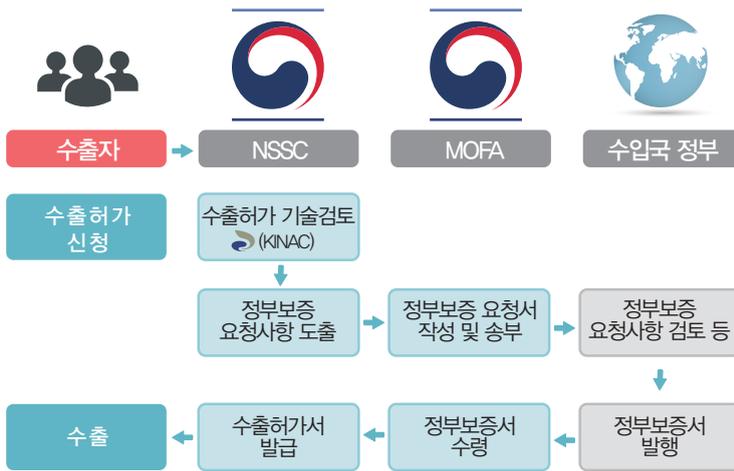
Q&A

◎ 정부보증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출품목을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정부보증) 하에서 수출허가를 발급합니다.
- 수입국에 요청하는 정부보증 내용은 아래 4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 ①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IAEA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③ IAEA 권고 수준(INFCIRC/225)에 부합하는 물리적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재이전시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증을 받거나 또는 우리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부보증 요청 및 수령은 **양국 외교부의 공식서한 교환 절차**가 필요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전용품목 수출시, 사전에 정부보증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Q. 정부보증 시수출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10p.

수입국 정부보증 수령절차



※ 단, 수입국이 핵무기 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고, 재수출이 아닌 최초 수출일 경우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합니다.
 ※ 또한, 수출품목이 '기술' 인 경우에 한해서, 정부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 ~49p. 참고)

◎ 허가 신청서류

필요서류	개별수출(20조)		원자력플랜트 기술수출(42조)	상황(51조)		중개 (54조)	경유환적 (56조)
	(물품)	(기술)		물품	기술		
허가 신청서 3부 (NEPS 신청서 1부)	○	○	○	○	○	○	○
계약관련서류	○	○(a)	○	○	○	○	○
전문판정서 (NEPS를 통해 발급)	○	○	○	○	○		
기술명세서 <별지 제1호의3>		○	○		○		
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				
수입목적확인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별지 제2호>	○ (b,c,d,e,f)			○		○	
수출자서약서 <별지 제3호>	○	○	○	○	○		
최종사용자서약서 <별지 제2호의2>	○ (c,d,e,f)	○(c)	○(c)	○	○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등	○(c)			○			
중개관련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분표(핵연료, 핵원료, 중수소 등)	○ (물질의 경우)						

- ○는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함
- 필요서류 아래 < > 괄호는 해당 서류의 서식임
- ()괄호 안의 알파벳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서류 면제가 가능함
 - ※조건(알파벳)이 여러개인 경우,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서류 면제
 - (a) :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 (b) :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 (c) : 수입국 정부로부터 정부보증을 수령한 경우
 - (d) : NSG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e)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 후 재반입할 조건인 경우
 - (f) : 외국에서 검사, 시험, 보정, 수리 후 재반입할 조건인 경우

3.3 수출허가 예외·면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허가 예외조건(기술의 경우에만 해당)과 허가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 수출허가 예외 조건

- 수출품목이 '기술' 인 경우, 아래의 예외 조건을 만족하면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를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득한 물품 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수출허가 면제 조건

- 개별 수출허가 대상이지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별 수출허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출품목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인 경우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 및 소프트웨어〉
-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 ※단, 최종목적지 또는 경유/환적지가 수단, 시리아, 북한인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기술〉
-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관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 하는 경우

* 수출허가 예외·면제 대상 여부는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에 전문판정(☎ p.15)을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예외·면제 조건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A

Q. 수출허가 예외조건과 면제조건은 무엇이 인가요?

☞ p.79

Q.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기술은 모두 수출허가 면제대상인가요?

☞ p.79

3.4 수출허가 위반 시 처벌

–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행위는 무허가수출에 해당되며, 벌금, 징역, 수출입금지, 교육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상황, 경유·환적, 중개허가 위반 시 처벌

위반 행위	벌칙	조항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경유·환적, 중개한 자 또는 미수범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5배 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 1항, 제55조
·허가 없이 수출, 경유·환적, 중개한 자 또는 미수범·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수출, 수입 가격을 위조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 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자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위반자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금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허가 없이 수출, 경유·환적, 중개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상황 허가를 받은자	위반자(대표자 또는 실무 담당 자)에게 8시간 이내 교육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 제공)	대외무역법 제49조, 고시 제93조

※ 벌금형은 양벌규정(행위자 뿐 아니라 법안에게도 부과)으로 적용됩니다.

3장 핵물질 수출입통제 제도

1. 핵물질 수출입통제 개요

2.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 2.1.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개념
- 2.2.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절차

3.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 3.1.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개념
- 3.2.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절차
- 3.3.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면제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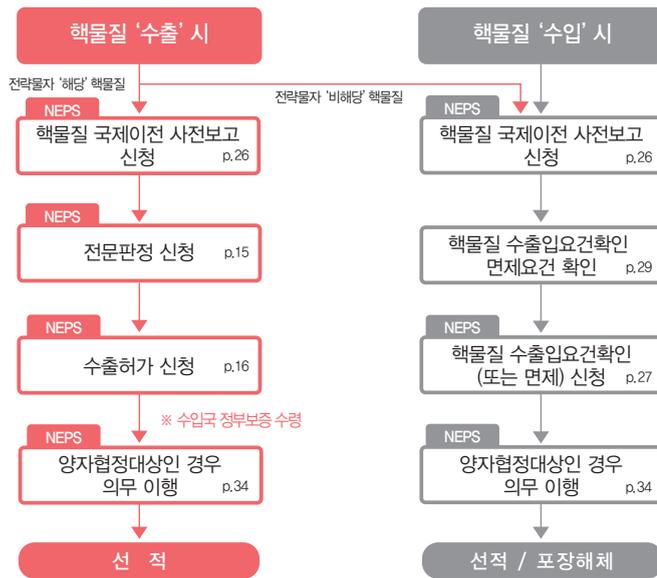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75년 국제원자력기구(AEA)와 체결한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외로 이전되는 핵물질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하여 국제규제물자 핵물질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핵공급국그룹(NSG) 회원국으로서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국제지침을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수출허가 등의 제도를 통해 전략물자 핵물질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핵물질의 수출입시, 수출입조건 및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목) 여부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제도가 다릅니다.

◎ 핵물질을 '수출' 하는 경우

- 핵물질의 종류, 농축도, 양 등에 따라 전략물자 여부가 결정(☞ p.25 참고)되면,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 ⇒ 국제이전 사전보고, 전문판정, 수출허가
 -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핵물질 ⇒ 국제이전 사전보고,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 핵물질을 '수입' 하는 경우

- 핵물질의 종류, 농축도, 양 등 전략물자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이전 사전보고 및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 NEPS : 제도 대상자가 NEPS 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

Q&A

◎ 전략물자 핵물질 vs. 비 전략물자 핵물질

전략물자 핵물질	비 전략물자 핵물질
- 단일 최종국에 1년(1.1 ~ 12.31) 동안 수출누적량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루토늄(Pu-238 80% 이하) 50 유효g 이상 · 농축 우라늄 50 유효g 이상 · 천연우라늄 500 kg 이상 · 감손우라늄 1,000 kg 이상 · 토륨 1,000 kg 이상 	- 단일 최종국에 1년(1.1~12.31) 동안 수출누적량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루토늄(Pu-238 80% 이하) 50 유효g 미만 · 농축 우라늄 50 유효g 미만 · 천연우라늄 500 kg 미만 · 감손우라늄 1,000 kg 미만 · 토륨 1,000 kg 미만 - 플루토늄(Pu-238 80% 초과) - 계측기에 내장된 수g 이하의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Q. 유효g, 유효kg이 무엇 인가요? ☞ p.82

※ 우라늄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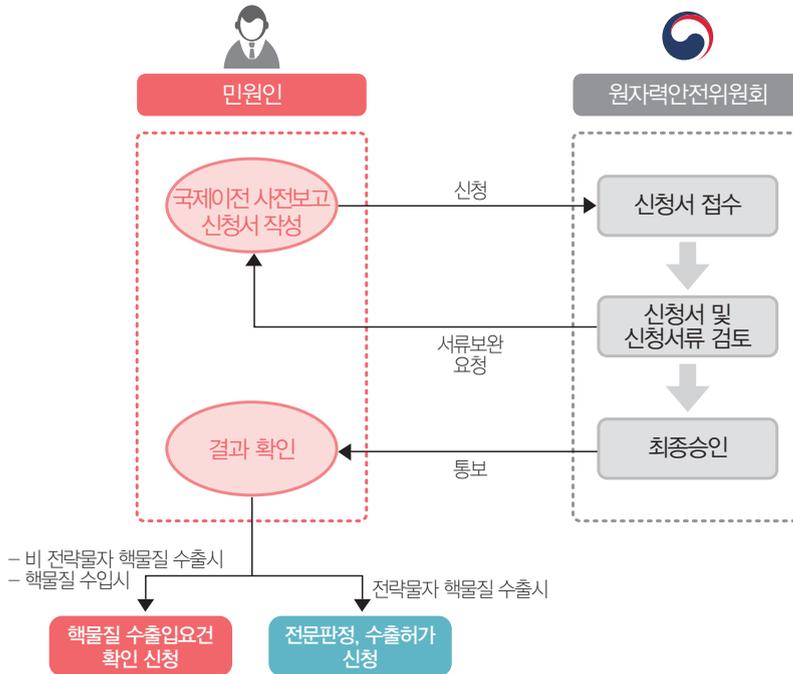
- 천연우라늄: U-238 양에 대한 동위원소 U-235, U-233의 비율이 천연상태와 동일한 우라늄
- 감손우라늄: U-238 양에 대해 함유된 U-235, U-233 또는 두 동위원소 총량의 비율이 천연우라늄의 비율보다 작은 우라늄
- 농축우라늄: 함유된 U-238 양에 대한 U-235, U-233 또는 두 동위원소 총량의 비율이 천연우라늄의 비율보다 큰 우라늄

2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2.1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개념

- 우리나라는 197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내외로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핵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핵물질의 수출입 관련 사항을 보고기한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 국제이전사전보고가 완료되어야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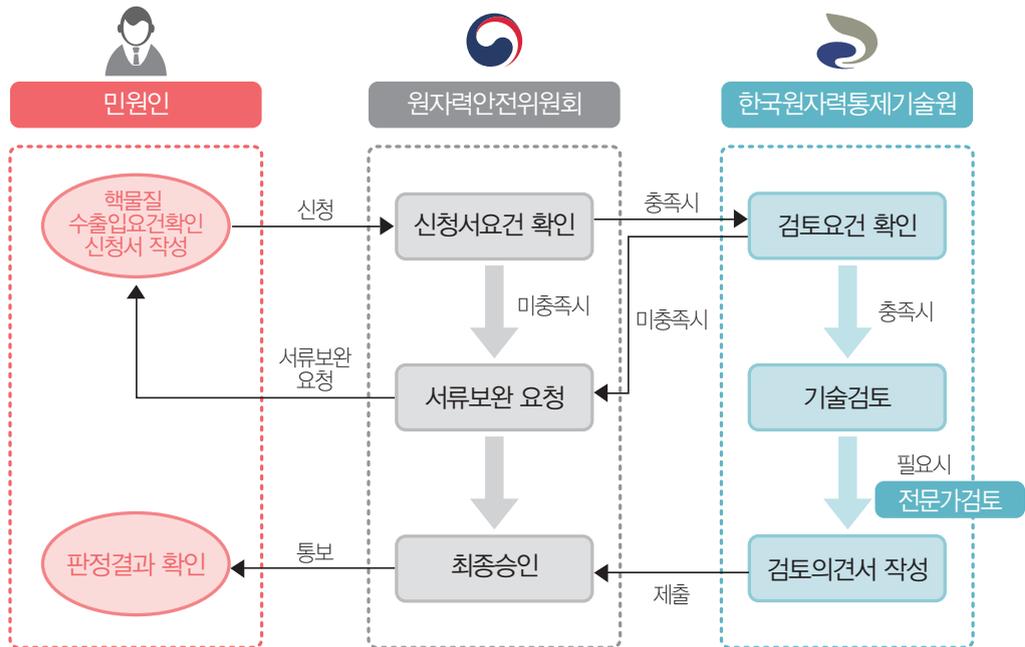
- 신청 대상: 수출입 하고자 하는 모든 핵물질
- 신청 서류: 수출입하는 핵물질 정보를 증빙하는 서류
- 보고 내용: 핵물질의 형태, 양, 목적지, 수송수단, 인수계획 등
- 보고 방법: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통한 보고 (☞ p.67 참고)
- 보고 기한:
 - 1 유효kg 이상 핵물질: 선적(수출시)/포장해체(수입시) 4주전
 - 1 유효kg 미만 핵물질: 선적(수출시)/포장해체(수입시) 2주전
- ※ 국제이전 사전보고는 기한 내 수행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 바랍니다.

3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3.1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개념

- 모든 핵물질의 수입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핵물질의 수출 시,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 국제이전 보고의무 이행 여부,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 등 수출입행위에 대한 요건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3.2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절차



- 신청대상: 수입시 ⇒ 모든 핵물질
수출시 ⇒ 비 전략물자 핵물질

-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서류 면제조건
1. 수출입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 신용장, 계약서, 가계약서, 의향서 등 2.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	-
3.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 ^(a)	- NEPS를 통해 신청 시 온라인서식(수출입 계획서 정보)에 기재하는 경우
4. 국제이전 사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b) 나.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c) 다.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 ^(d)	-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 NEPS를 통해 국제이전 사전보고를 신청 완료한 경우
5.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나. 핵연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 건설허가, 운영허가, 핵연료주기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핵물질을 그 허가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서류 중 괄호안의 알파벳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에 따른 서류 제출

- (a)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b)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별지 제9호 서식
- (c)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 (d)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방법: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에 신청 (☞ p.64 참고)
- 소요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Q&A

Q. 핵물질수출입요건 확인 발급 이후에 핵물질 수출입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새롭게 재신청 해야 하나요?

☞ p.82.

3.3 수출입요건확인 면제

-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핵물질의 경우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제8조에 따라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1)과 조건2)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1) **사용허가 면제대상 핵연료 물질** 또는 **사용신고 면제대상 핵원료물질**
 - 조건2) **보고면제대상** (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4조2항)
- ※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을 통해 **반드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A

Q. 사용신고 면제대상 핵원료물질은 무엇인가요?
☞ p.83

Q. 사용허가 면제대상 핵원료물질은 무엇인가요?
☞ p.83

Q. 보고 면제대상 물질은 무엇인가요? ☞ p.83



4장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1. 개요

- 1.1.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개념
- 1.2.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의의
- 1.3.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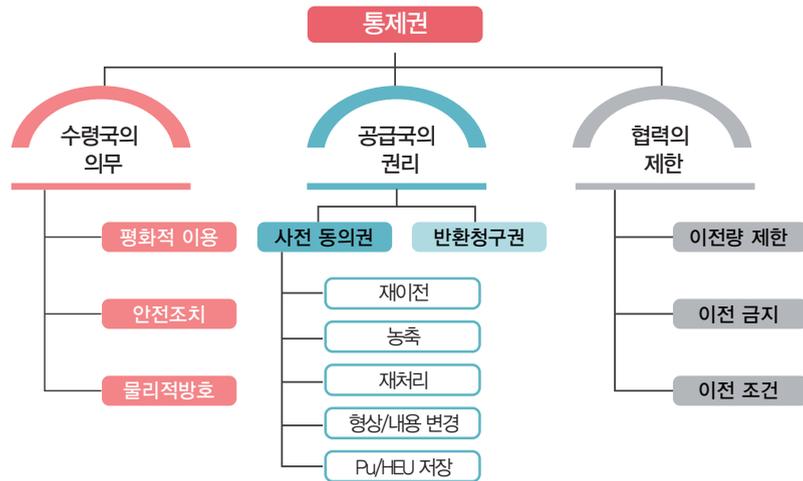
2.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입 의무

- 2.1. 협정대상품목
- 2.2. 협정대상품목 수출입시 이행절차

1 개요

1.1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개념

-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은 두 국가간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간 합의로서 핵물질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품목을 국가간 이전시에 수행해야 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동 협정의 내용은 양국간 이전 품목에 대한 수령국의 의무 및 공급국의 권리를 포함하며, 대상품목 및 세부사항은 체결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따라서, 협정에서 정한 품목을 양국간 이전 또는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협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불성실한 이행시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의의

-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 관련 기술이전 및 R&D 협력의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비확산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A

Q. 우리나라와 어떤 국가들과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나요?
 p.84

1.3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현황

- 대한민국정부는 **29개국**과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 이 중 미국, 캐나다, 호주는 부속 행정약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 미국, 캐나다, 호주와 체결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체결국	발효일	적용대상	평화적 이용보증	사전 동의권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핵물질 방호 조치
				이전	제3국 이전	재처리	농축		
미국	2015년 11월	정보, 핵물질, 감속재, 장비 및 구성품, 상가품목, 유래품목 등	군사목적 이용금지	사전 통보	사전 서면 동의	양국이 합의한 시설 내에서 가능	양국 사전 서면 합의	적용	국제원자력기구 권고 준수
캐나다	1976년 1월	장비, 물질, 핵물질 및 시설, 상가품목, 유래품목 등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 제조, 획득, 이용금지	사전 통보	사전 서면 동의	사전 서면 동의	양국 사전 서면 합의	적용	국제원자력기구 권고 준수
호주	1979년 5월	핵물질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 제조, 획득, 이용 금지	사전 연락	사전 서면 동의	사전 서면 동의	양국 사전 서면 합의 (20% 이상 농축 시)	적용	부속서 준수

2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입 의무

2.1 협정대상품목

-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원자력협력협정 및 부속 행정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협정대상품목의 수출입 및 재이전시 등 협정 및 약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각 국가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Q&A

Q.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협정대상 품목이 있나요? ☞ p.84

구분/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핵물질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비핵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삼중수소 · 흑연 · 상기관련 부산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삼중수소 · 흑연 · 삼중수소 회수 또는 동위원소 교환반응을 촉진 하려는 목적으로 제조된 백금촉매 	해당없음
장비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로 압력용기 · 원격 연료 인출/장전장치 · 원자로 제어봉 계통 · 원자로냉각재펌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로 · 연료장전 및 제거장치 · 원자로 제어봉 · 원자로 압력관 · 지르코늄관 · 원자로냉각재펌프 · 재처리시설 ·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장비 · 중수생산 플랜트 등 · 삼중수소 시설, 또는 공장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장비 (WTRF교환각서에 명시된 장비) 	해당없음
정보 또는 기술	해당없음	정보 및 기술훈련	해당없음

2.2 협정대상품목 수출입시 이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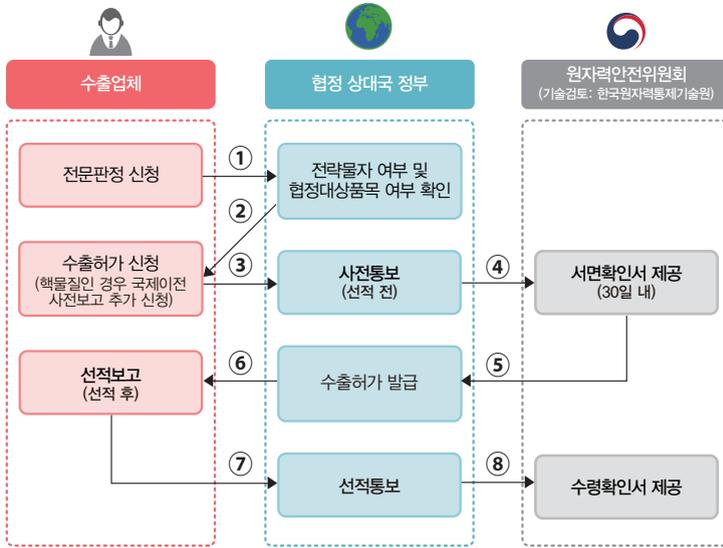
-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간의 행정약정을 준수하여야만 해당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협정 대상품목의 수출입시 준수해야 할 행정약정 및 그 외 원자력수출입제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행정약정 준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수출입자는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구분	절차	신청시기	참고
수출 및 재이전	전문판정	수출하고자 하는 즉시	p.15
	(전략물자인 경우) 수출허가	전문판정서 발급 후	p.16
	(핵물질의 경우) 국제이전사전보고	선적 4주전	p.26
	행정약정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자료 제출	전문판정서 발급 후 ¹⁾ 및 선적 후 ²⁾	p.36,38,39
수입	(핵물질의 경우) 국제이전사전보고, 핵물질수출입 요건확인	포장, 해체 2주전 통관 전	p.26,27
	행정약정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자료 제출	상대국 사전통보서 접수 후 ³⁾ 및 통관 후 ⁴⁾	p.37

- 1) 사전통보서 또는 재이전 동의요청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 2) 선적통보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 3) 서면확인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 4) 수령확인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 각 절차는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행정약정 관련 기능은 개발 중에 있으며 2021년 오픈 예정입니다. 시스템 정식 운영 전까지는 행정약정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 수출시 이행절차



- 국내업체가 협정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간 ①~⑧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야 협정대상품목의 수출이 완료됩니다.

- ①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및 협정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략물자 및 협정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판정서를 발급합니다.
- ③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국내 수출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p.16 참고) 이 때, 수출품목이 핵물질인 경우, 전략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이전 사전보고를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p.26 참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수출허가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국에
- ④ 사전통보를 송부합니다.
상대국 정부는 자국 수입자의 확인을 거쳐 우리나라에 서면확인서를 송부합니다.
- ⑤ 통상적으로 사전통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확인서를 송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대국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수령한 후 수출허가를 발급합니다.
- ⑥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품목을 선적한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선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 ⑦ 선적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대국 정부에 선적통보를 하면,
- ⑧ 협정에 따른 이행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Q&A

Q. 선적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적보고에 필요한 서류
- 핵물질이동기록부 (NMCR, 핵물질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 등 물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시 이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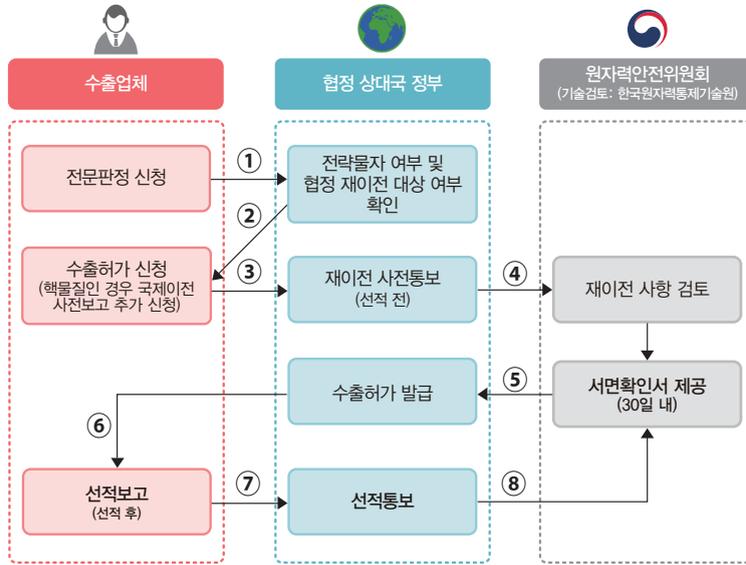
- 국내업체가 협정대상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간 ①~⑦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야 협정대상품목의 수입이 완료됩니다.

- ① 우리나라는 상대국 정부로부터 협정대상품목의 이전 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수령합니다.
-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전통보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수입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 ③ 수입업체는 공문으로 요청받은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수입물품이 핵물질인 경우, 국제이전 사전보고 및 핵물질수입요건확인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p.26, 27 참고)
- ④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제출서류에 대한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면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국 정부에 송부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전통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확인서를 송부합니다.
- ⑤ 상대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서면확인서를 바탕으로 수출허가를 발급하고, 해당 품목이 선적되면 우리나라에 선적통보를 합니다.
- ⑥ 해당 품목을 수령한 이후 국내 수입업체는 가능한 조속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령보고**를 해야 합니다.
- ⑦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령보고 정보를 검토 후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국 정부에 송부하면, 협정 이행절차가 마무리됩니다.

Q&A

Q. 수령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핵물질이동기록부 (NMCR, 핵물질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및 공급자성적서 등 물품수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재이전 사전동의 국가로 재이전시 이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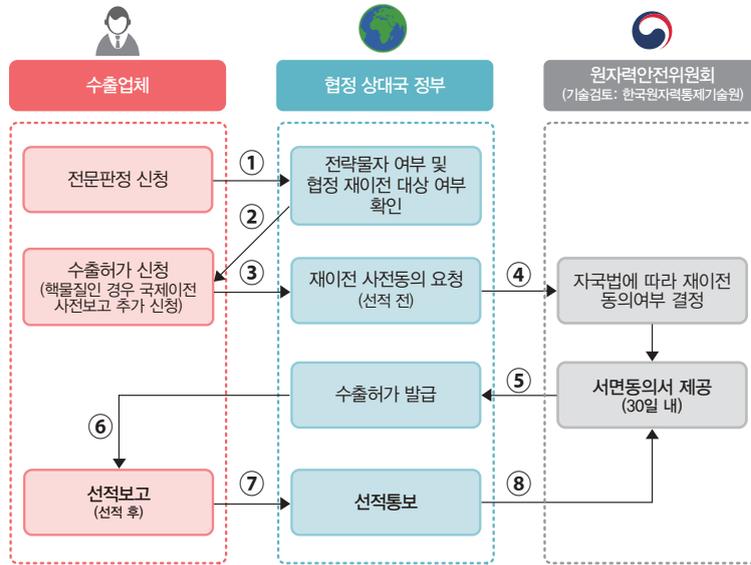
- 국내수출업체가 협정대상품목을 양자협정에 따른 재이전 사전동의 국가로 재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간 ①~⑧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야 협정대상품목의 재이전이 완료됩니다.

- ① 국내 수출업체는 재이전 품목의 전략물자 및 협정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략물자 및 협정에 따른 재이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판정서를 발급합니다.
- ③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국내 수출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p.16 참고) 이 때, 수출품목이 핵물질인 경우, 전략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이전 사전보고를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p.26 참고)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수출허가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국에 재이전 사전통보를 송부합니다.
- ⑤ 상대국 정부는 재이전 사항을 검토한 후, 서면확인서를 송부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전통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확인서를 송부합니다.
-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대국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수령한 후 수출허가를 발급합니다.
- ⑦ 국내 수출업체는 재이전 품목을 선적한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선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 ⑧ **선적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대국 정부에 선적통보를 하면, 협정에 따른 이행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Q&A

Q. 선적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적보고에 필요한 서류
 - 핵물질이동기록부 (NMCR 핵물질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 등 물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이전 사전 미동의 국가로 재이전시 이행절차



－ 국내수출업체가 협정대상품목을 양자협정에 따른 재이전 사전동의 국가 이외의 국가로 재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간 재이전 동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①~⑧ 절차가 모두 이행되어야 협정대상품목의 재이전이 완료됩니다.

- ① 국내 수출업체는 재이전 품목의 전략물자 및 협정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②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전략물자 및 협정에 따른 재이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판정서를 발급합니다.
- ③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국내 수출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p.16 참고) 이 때, 수출품목이 핵물질인 경우, 전략물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이전 사전보고를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p.26 참고)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수출허가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국에 재이전 사전 동의를 요청합니다.
- ⑤ 상대국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재이전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재이전 동의서를 송부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전통보 수령 후 30일이 소요되나, 상황에 따라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상대국의 정책적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수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대국 정부의 재이전 동의서를 수령한 후 수출허가를 발급합니다.
- ⑦ 국내 수출업체는 재이전품목을 선적한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선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 ⑧ 선적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대국 정부에 **선적통보**를 하면, 협정에 따른 이행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Q&A

Q. 선적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적보고에 필요한 서류
 - 핵물질이동기록부 (NMCR, 핵물질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 등 물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장 원자력전용기술 수출통제

1. 개요

- 1.1. 전략기술 통제 배경
- 1.2. 전략기술 통제 의의

2. 국내 원자력전용기술 통제

- 2.1. 원자력전용기술
- 2.2. 기술이전 범위
- 2.3. 기술이전 방식

3. 원자력전용기술 수출허가

- 3.1.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 3.2. 수출허가 절차
- 3.3. 정부보증 면제
- 3.4. 수출허가 예외·면제

1 개요

1.1 전략기술 통제 배경

-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물품'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전이 쉬운 '기술'을 획득하여 대량파괴무기(WMD)를 자체 제작하려는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의 시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또한, 전자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이메일, 전화, 팩스,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한 기술의 무형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전략기술이 불법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과거 '물품' 중심의 수출통제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을 법제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전략기술 통제 의의



- 전략기술의 수출통제는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국가 안보에 기여하며, 국제수출규범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제교류시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또한,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첨단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2 국내 원자력전용기술 통제

2.1 원자력전용기술

◎ 전략기술 개념

- 전략기술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와 운반체계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원자력전용기술 개념

- 원자력전용기술이란 전략기술 중 '핵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NSG 가이드라인(INFCIRC/254/Part1) 및 전략물자수입고시 별표2 제10부에 따른 원자력전용품목의 개발(Development), 생산(Production), 사용(Use)* 등에 필요한 특정정보(Specific Information)를 의미합니다.

* 전략기술 중 원자력전용기술의 수출통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개발·생산·사용의 개념

[개발] 생산 전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계, 설계연구, 설계분석, 설계개념, 원형의 조립과 시험, 시험생산체제, 설계자료, 설계자료를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 윤곽 설계, 통합설계, 배치 등
 [생산] 생산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건조, 생산엔지니어링, 제조, 통합, 조립/탑재, 검사, 시험, 품질보증 등
 [사용] 운용, 설치(현장설치 포함), 유지(점검), 보수, 검사, 수리 혹은 갱신 등

- '기술'은 기술자료 또는 기술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디스크, 테이프, 읽기 전용 기억장치와 같은 매체 또는 다른 매체에 쓰여져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청사진, 계획, 도표, 모형, 공식, 공학 설계도 및 규격서, 매뉴얼 및 지침서 등



- [기술지원] 기능, 훈련, 작업지시, 자문서비스 등

◎ 원자력전용기술 예시

구분	소분류	내용
교육 및 자문	교육 및 교재	•교육, 세미나/회의 •교육교재, 세미나/회의 자료
	자문 및 용역	•자문, 용역
도면	흐름도(Diagram)	•흐름도, P&ID, C&ID
	도면(Drawing)	•도면, Plan, Detail, Outline, Layout, Route, Section, 기타도면
기술문서	지침서(Guideline)	•지침서, Test Guideline, Manual, Handbook, Operation Guideline
	요건서(Requirement)	•요건서, 연계서, Interface Requirement
	시방서(Specification)	•시방서, Design Specification
	계산서(Calculation)	•계산서, Date
	보고서(Report)	•보고서, Evaluation, PSAR, FSAR
	설명서(Description)	•설명서
	절차서(Procedure)	•절차서
	기타 기술문서	•Criteria, Base, List, Load

2.2 기술이전 범위

- 통제대상이 되는 원자력전용기술 기술이전 범위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
- 국내에서 내국인(국내 법인 포함)이 외국인(해외 법인 포함)에게 이전하는 행위
- 해외에서 내국인(국내 법인 포함)이 외국인(해외 법인 포함)에게 이전하는 행위

- 이 때 기술이전 개념은 대가성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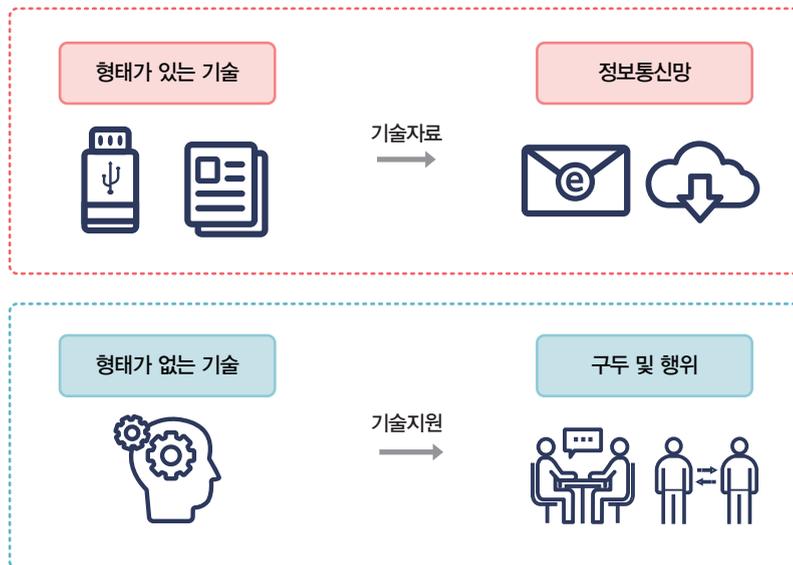
Q. 국내 본점직원(한국인)이 해외 지사의 직원(한국인)으로 기술을 전송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p.88

Q. A회사 소속 한국인 직원이 같은 회사 외국인 직원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p.85

2.3 기술이전 방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략기술(원자력전용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 이 중에서 1), 2)에 해당하는 이전을 기술의 무형이전(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또는 무형기술이전 (ITT,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이라고 합니다.
- 3)에 해당하는 이전은 기술의 유형이전이라고 합니다.



Q&A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8년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이전의 방식을 1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13의 2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수출허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판정 ☞ p.15 참고, 수출허가 ☞ p.16 참고)

[기술이전 방식]

- (a)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을 통한 기술 이전
- (b)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c)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
- (d)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 이전
- (e)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로 기술 이전
- (f) 외국인이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
- (g)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 이전
- (h) 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
- (i) 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j)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
- (k)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 이전
- (l)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
- (m)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
- (n)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 이전

Q. 통제대상이 되는 기술이전 사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p.85



3 원자력전용기술 수출허가

3.1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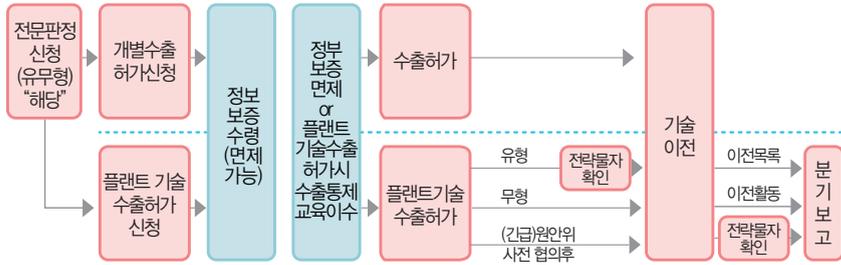
-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술(원자력전용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원자력 관련 기술을 이전 하는 경우, 이전 행위가 수출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판단절차에 따라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원자력전용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기술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15 참고)
- 전략기술(원자력전용기술)에 해당하여도 국내에서 한국인간 이전되는 경우는 수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전략기술(원자력전용기술)에 해당하여도 이전 조건이 수출허가 예외·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역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각 절차에 따른 상세설명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수출허가 절차

- 원자력 관련 기술 이전 시 수출허가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때 발급받을 수 있는 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가 있습니다.



◎ 개별수출허가

- 개별 신청건에 대해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기술수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동안 수출을 허가하는 행위입니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원자력전용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원자력전용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별수출허가를 발급받은 후 이전해야 합니다.

◎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 원자력플랜트* 수출사업에 대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행위입니다.

*원자력플랜트란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주기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는 원전수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하 지속적인 기술이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일괄허가를 통해 행정소요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본 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적용되며, 사업자가 임의로 제도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허가 발급 전 이행사항

- 기술이전의 상세 정보 제출
- 수출통제 교육 이수

- 허가 발급 후 이행사항:

- 수출 전 전문판정을 통한 원자력전용기술 여부 확인
- 전략물자(원자력전용품목)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전 목록 제출

* 단, 사전협의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한 기술이전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이전 후에 전문판정 및 분기보고가 가능합니다.

3.3 정부보증 면제

- 수입국의 정부보증을 수령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의 중요도가 낮거나 실질적인 수출통제 효과가 작은 경우 정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부보증을 면제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부면제 (c)~(g)에 해당하는 경우 KINAC이 주관하는 수출통제 교육(3시간 이내)*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출통제 교육을 이수하기 원하시면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 상담게시판에 문의바랍니다.

[정부보증의 면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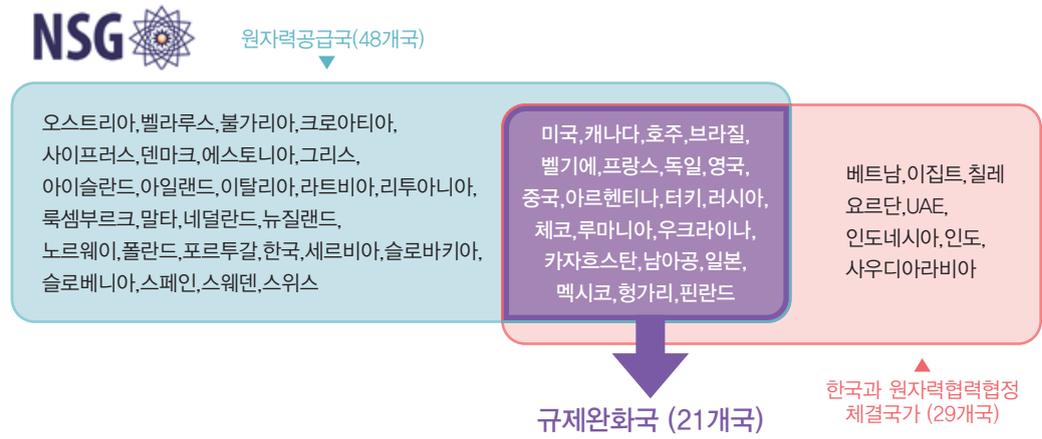
[무조건 면제]

- (a) 수입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경우
- (b)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원자력협력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별도의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면제] ⇒ KINAC 수출통제 교육 이수 필요

- (c) 규제완화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간 원자력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 (d)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규제완화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e) 규제완화국 국적의 외국인(개인)에 한함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f) 비규제완화국 국적의 외국인(기밀유지협약 체결 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자)에 한함에게 무형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g) 인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규제완화국의 정부, 인허가 관련 기관 또는 업체로 원자력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 규제완화국: 군사·외교적 민감성이 낮고 핵비확산 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국가로서 NSG 회원국인면서 우리나라와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한 21개국



3.4 수출허가 예외·면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 및 26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허가행위가 면제 됩니다.

◎ 수출허가 예외 조건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를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득한 물품 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기초과학연구 개념

- 기초과학연구는 총 9단계의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중에서 2단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국가 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도 기술 수입국이나 이전 목적 등 수출허가 검토 사항과 관련된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면제 조건

-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 하는 경우

※ 수출허가 예외·면제 대상 여부는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에 전문판정(※ p.15)을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예외·면제 조건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A

Q.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p.81)

Q.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기술은 모두 수출허가 면제대상인가? (※ p.79)

6장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1. NEPS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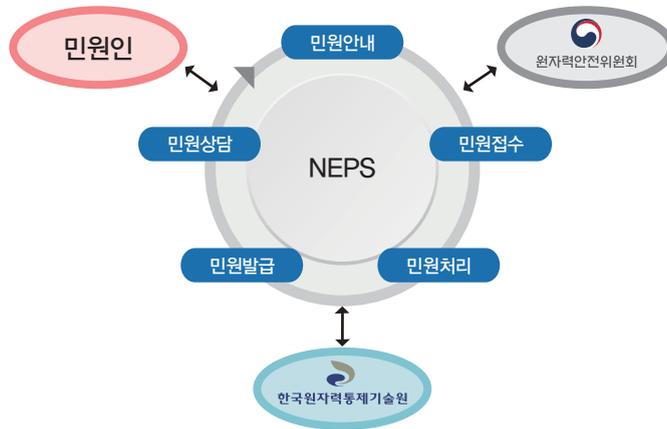
- 1.1. NEPS 포털
- 1.2. NEPS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2. 주요 민원업무 처리절차

- 2.1. 전문판정
- 2.2. 수출허가
- 2.3. 핵물질 수출입
- 2.4. 민원발급
- 2.5. 민원상담

1 NEPS 소개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은 국내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이행시 필요한 각종 민원의 신청, 처리,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입통제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p>원스탑(One-Stop) 민원처리시스템</p> <p>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처리, 민원발급, 민원상담 등 모든 민원업무가 한 곳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종이문서 없는(Paperless) 민원처리시스템</p> <p>종이문서로 처리되던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로 처리가능 하도록 전산화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실시간 문자안내 민원처리시스템</p> <p>민원신청 및 민원상담 등의 접수부터 처리완료 시까지 진행 상태를 문자메시지전송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p>
 <p>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p> <p>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모바일 환경 지원, 서비스의 모듈화 등 민원업무에 최적화된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강력한 문서 보안 시스템</p> <p>민원 신청시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해 문서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기술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p> <p><small>*DRM: Digital Rights Management</small></p>	 <p>사용자 중심 시스템</p> <p>온라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SMS/E-mail을 통해 현황 및 처리결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통관 간소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1.1 NEPS 포털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포털은 수출입통제체제, 관련법령, 업무별 민원신청 안내, 유관기관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수출통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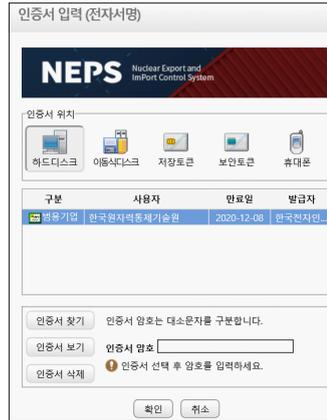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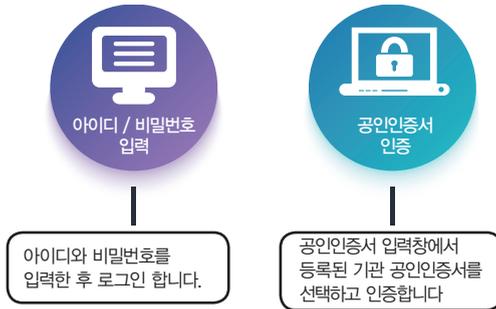
◎ NEPS 포털 목차 구성

- 수출통제체제: 국제수출통제체제, 국내원자력 수출통제체제, 원자력수출통제 품목, 수출통제 법령정보, 원자력협력협정
- 민원신청안내: 전문판정, 수출허가,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보고, 수입목적확인, 온라인시스템이용안내
- 민원신청: 민원신청, 수출통제상담
- 자료실: 공지사항, 해외유관기관, 국내유관기관, 원자력용어사전, 우려거래자목록
- NEPS 소개: NEPS 소개, 시스템 이용안내, 연락처
-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1.2 NEPS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 원자력 수출입통제제도 이행을 위한 민원신청, 민원조회, 민원발급 및 민원상담 등 원자력 수출입관련 민원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NEPS 포털에서 '민원신청' 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되며, 회원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기관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만 허용)** 을 하면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절차가 기재된 '온라인업무시스템 매뉴얼(민원 신청자용)' 을 열람하여 NEPS 이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1월, NEPS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서비스 및 NEPS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스템 재구축 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Q&A

Q. 개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은 안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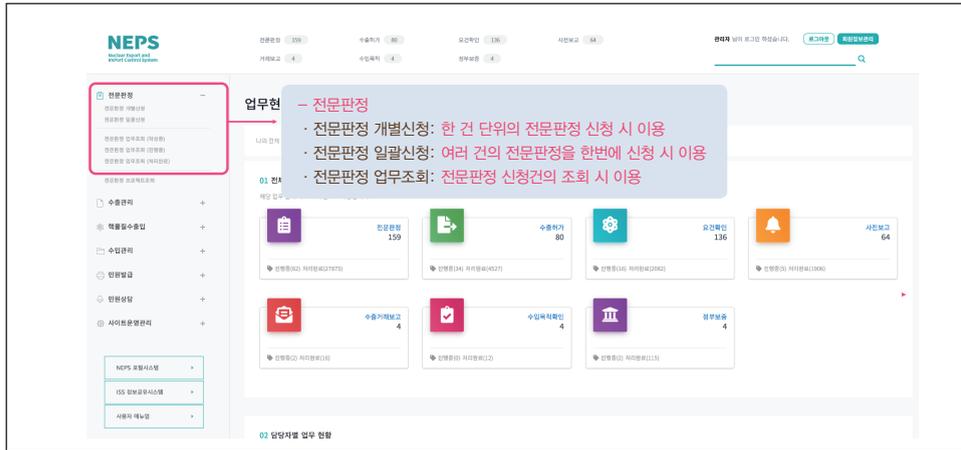
☞ NEPS를 통해 처리되는 모든 민원업무는 '개인' 이 아닌 '기관 및 법인' 대수입입니다. 회원가입 시 반드시 업체정보를 등록해야하며, 로그인시 등록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 또는 법인소속 이 아닌 '개인' 이 원자력 수출입통제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입 통제실로 문의 바랍니다.

2 주요 민원업무 처리절차

2.1 전문판정

- 온라인 민원업무시스템에 접속 후, 좌측탭에서 전문판정 관련 민원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판정 개별신청 절차

- 전문판정 개별신청 탭을 통해 개별건에 대한 전문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크표시 된 항목은 필수적으로 정보를 기입하거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 품목정보 **거래정보** 비교 필요첨부서류

Step 03 거래정보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수출국 ✓ 원산지 ✓ 원자력계통 ✓ 수출목적 ✓ 이전방법 ✓

5

수출국을 선택하세요

원산지를 선택하세요
 - 원산지 정보는 양자 협정대상품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 원자력 계통은 1차계통, MMS, 1차 보조계통, 2차 및 기타계통, 해당없음 중 선택

원자력계통을 선택하세요

*최대 입력 글자 수는 2,000글자 입니다.

이전방법을 선택하세요

임시저장 신청서 접수 신청서 삭제 다음단계 이동

6 다음 ▶

신청인정보 품목정보 거래정보 **비교** 필요첨부서류

Step 05 필요 첨부 서류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문서보안솔루션(DRM)적용에 따라 hwp, pdf, doc, ppt, xls 등의 문서서식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zip 등 압축파일 첨부불가)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 그 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

7

- 신청건 관련 민원상담 내역이 있는 경우 정보 기입

8

DRAG & DROP
Drop files and folders here

DRAG & DROP
Drop files and folders here

- 문서를 드래그하여 서류 첨부
 - 문서보안솔루션 작동으로 인해 한번 등록된 서류는 열람이 불가능함
 - 문서서식파일(hwp, pdf, ppt, doc 등과 사진(jpeg, png 등의 압축파일, 실행파일 등은 업로드 불가

- 전문판정 시 신청하는 서류는 원본파일 (실제 이전 하는 것과 동일한 파일이어야 함)
 - 원본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기재 필수

9

첨부파일원본여부 ✓ 해당 첨부파일들은 모두 원본파일입니다.

원본대체사유 ✓

*최대 입력 글자 수는 200글자 입니다.

임시저장 신청서 접수 신청서 삭제

10 신청 접수 완료

◎ 전문판정 일괄신청 절차

- 여러 건의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한번에 등록하여 일괄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품목 정보 입력 시 일괄등록서식(엑셀파일)을 통해 한 번에 정보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그 외 첨부서류 등록 등의 절차는 개별신청건과 동일합니다.
- ※ 일괄등록서식 작성시 '첨부파일 정보' 항목에는 업로드 할 첨부서류 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업로드 할 파일명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신청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정보로 자동 기입됨

1 신청인정보 대량업로드 일괄등록

Step 02 대량업로드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2 전문판정 일괄등록서식

전문판정 일괄등록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입력 후 업로드

Excel 업로드

DRAG & DROP
Drop files and folders here

전문판정일괄등록서식(Excel)

	A	B	C	D	E	F	G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el에서 제공하는 함수 또는 서식은 적용 하지 마십시오. • 특수문자는 입력하지 마세요. (예. ~ ^ & 등) • 빨간색으로 표기된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전문판정 거래 정보의 경우, 결정 및 상황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 구분자표하여 입력하시고 확장자까지 작성해주세요. • 첨부 파일명 작성 시, 실제 업로드 할 파일과 확장자까지 동일하게 작성(대소문자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 신청 시, 관정받으려는 기술의 원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미첨부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2	전문판정 품목 정보(전문판정 신청서 필수 정보)						
3	프로젝트구분	품목구분	HS코드	품목명	모델번호 및 모델명	규격	용도
4	기타	시스템, 장비 및 부품	1	test	test	규격	용도
5							

◎ 전문판정 업무조회

- 전문판정 신청건의 업무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업무조회는 진행단계에 따라 '처리대상', '진행중', '처리완료' 탭으로 분류됨

전문판정 업무조회 **처리대상**

전문판정 업무조회 **진행중**

* (작성중): 신청자가 작성중인 건 또는 신청 후 심사 담당자가 보완요청한 건 조회 시 이용
 (진행중): 접수되어 담당자 검토 중인 건 조회 시 이용
 (처리완료): 담당자 검토가 완료된 건 조회 시 이용

전문판정 업무조회 **처리완료**

* 처리완료 업무 현황입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KINAC 접수: 신청건을 KINAC이 접수한 상태
 * KINAC 심사: 심사 담당자에게 배정된 상태
 * KINAC 결재: 담당자 검토 후, 최종검토회의 전 상태
 * 처리완료: 최종검토회의를 거쳐 판정결과가 발급된 상태
 * 자료보완: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이 요청된 상태
 * 신청취소: 신청이 취소된 상태

전문판정 업무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번	접수번호	신청상태	신청일자	신청종류	신청목적의 분류	종류명	모달번호 및 모달명	업종명
1	202009230002241	처리완료		배해당	OSSA	가솔		
2	202009230002240	처리완료		배해당	OSSA	가솔		
3	202009210002197	신청취소		배해당	UAE BNPP	가솔		
4	202009180002194	처리완료		배해당	기타	가솔		

◎ 전문판정 이의신청

- 전문판정 결과에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판정 처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신청한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판정 결과 전문판정

이의신청

신청분야: 전문판정 결과

사유: 사유

→ 이의신청

처리완료건의 업무 조회 화면에서 판정결과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Cancel

업종명: 배해당

신청일자: 2020-03-20 18:00:00

처리완료예정일: 2020-03-03 19:19:12

발급번호: 11120200003

판정결과: 해당없음

2.2 수출허가

- 온라인 민원업무시스템에 접속 후, 좌측탭에서 수출허가 관련 민원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

- 전략물자(기술외) 개별신청: **물품 및 소프트웨어 대상 수출허가 신청 시 이용**
- 전략물자(기술) 개별신청: **기술 대상 수출허가 신청 시 이용**
- 원자력플랜트 개별신청: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 시 이용**
- 상황허가 개별신청: **상황허가 신청 시 이용**
- 중개허가 개별신청: **중개허가 신청 시 이용**
- 경유허가 개별신청: **경유허가 신청 시 이용**
- 환적허가 개별신청: **환적허가 신청 시 이용**
- 수출허가 일괄신청: **여러건의 수출허가를 한번에 신청 시 이용**
- 수출허가 업무조회: **수출허가 신청건의 조회 시 이용**
- 수출허가 통관조회: **수출허가 발급건의 통관현황 조회 시 이용**

- 수출거래 보고

- 수출거래보고 신청: **수출허가 면제 대상의 수출거래보고 신청 시 이용**
- 수출거래보고 업무조회: **작성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수출허가 신청건의 조회 시 이용**

- 이전보고

- 이전보고 일괄신청: **수출허가 받은 품목의 이전(수출) 보고 시 이용 (ISS 시스템과 연동)**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업무조회: **기 수출허가 받은 기술문서의 개정, 변경사항 보고 시 이용**

◎ 수출허가 개별신청 절차

- 수출허가 개별신청 탭을 통해 개별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크표시 된 항목은 필수적으로 정보를 기입하거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신청인정보

2. 수출허가 신청건에 해당하는 전문판정 발급번호 선택

3. 수출품목의 단가, 수량, 가액 정보 입력

4. 다음

전문판정 발급번호 선택 시 자동 기입됨

다음단계 이동

5. 클릭하여 거래자 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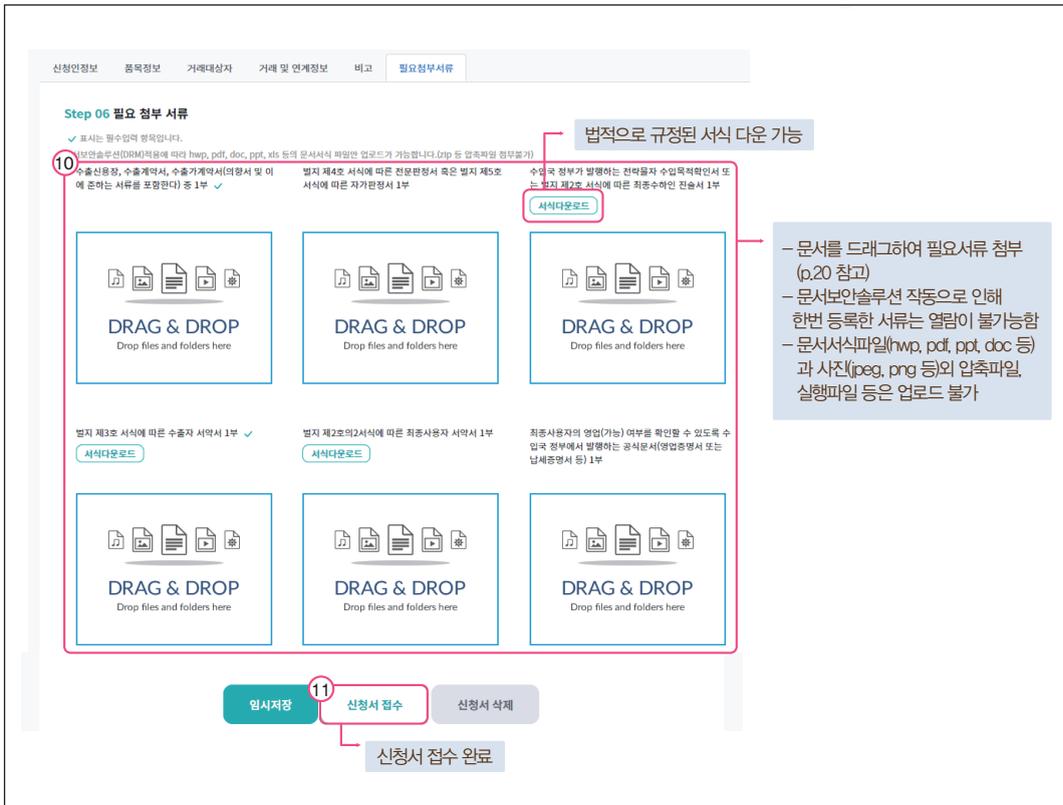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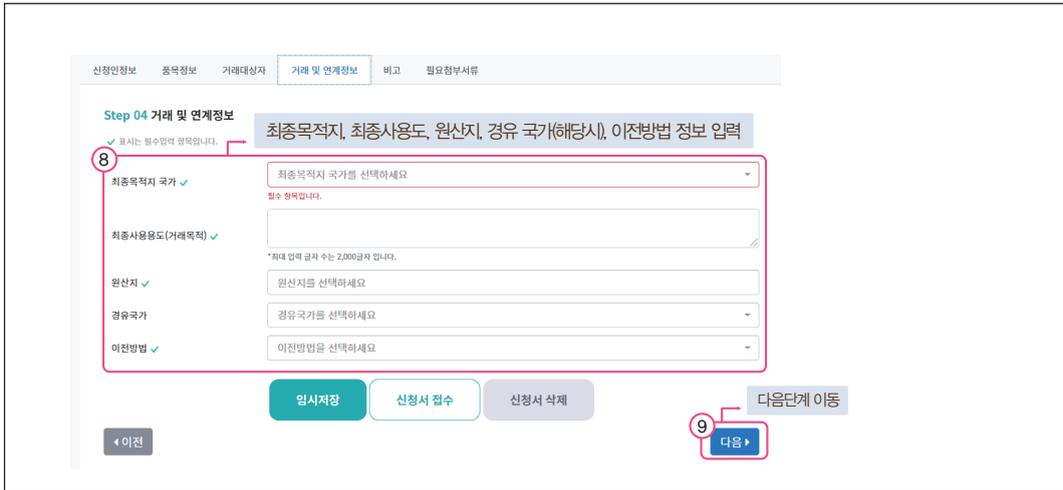
6. 거래자관리

7. 다음

최종수하인이 구매자와 동일시 클릭

최종사용자가 최종수하인 및 구매자와 동일시 클릭

다음단계 이동



◎ 수출허가 일괄신청 절차

- 여러 건의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출허가 일괄신청 탭을 통해 각 신청건의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보입력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법1) 일괄등록서식(엑셀파일) 다운 → 서식에 수출허가 정보를 입력 → 서식 업로드
 - (방법2) Step2 조회화면에서 신청대상 선택 → 등록목록 생성 → Step3 화면 목록에 수출허가 정보 기입
 - 그 외 첨부서류 등록 등의 절차는 개별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 ※신청정보 기입 시 첨부서류 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업로드 할 파일명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신청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다운로드 클릭 → '선택목록 일괄등록서식(excel)' 다운로드
→ 서식 내 '수출허가 공통 정보' 입력 후 저장 →
파일업로드 클릭 → 완성한 서식파일 등록

(방법2) 등록 목록 생성

- 신청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됨
- 단, 이전화면에서 '방법2) 등록 목록 생성' 을
통해 신청정보를 불러온 경우, 본 화면에서
스크롤을 움직여 수출허가 항목을 기입해야 함

수출허가 관련 제출서류 차례대로 업로드

신청서 접수 완료

◎ 수출허가 업무조회

* 업무조회는 진행단계에 따라 '처리대상', '진행중', '처리완료' 탭으로 분류됨

수출허가 업무조회 **처리대상**

* (작성중): 신청자가 작성중인 건 또는 신청 후 심사 담당자가 보완요청한 건 조회 시 이용
 (진행중): 접수되어 담당자 검토 중인 건 조회 시 이용
 (처리완료): 담당자 검토가 완료된 건 조회 시 이용

수출허가 업무조회 **진행중**

수출허가 업무조회 **처리완료**

* NSSC 접수: 신청건을 NSSC가 접수한 상태
 KINAC 접수: 기술심사를 위해 KINAC에 접수된 상태
 KINAC 심사: 심사 담당자에게 배정한 상태
 KINAC 결재: 담당자 검토 후 KINAC 내 결재진행 상태
 NSSC 결재: KINAC 심사결과에 대한 NSSC 내 결재진행 상태
 처리완료: 최종 검토를 거쳐 NSSC의 허가가 발급된 상태
 자료보완: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이 요청된 상태
 신청취소: 신청이 취소된 상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건의 상세 신청정보 화면으로 이동

수출허가 업무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개별	접수번호	진행상태	판결결과	허가유형	프로젝트 구분	신청품목의 분류	최종목적지 국가
<input type="checkbox"/>	20200924	처리완료	해당없음	수출허가(기술위)	기타	소프트웨어	기타
<input type="checkbox"/>	20200911	처리완료	허가	수출허가(기술위)	기타	소프트웨어	미국
<input type="checkbox"/>	20200907	처리완료	허가	수출허가(기술위)	기타	시스템, 장비 및 부품	러시아
<input type="checkbox"/>	20200828	처리완료	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	기타	기술	미국
<input type="checkbox"/>	20200824	처리완료	허가	수출허가(기술)	기타	기술	아랍에미리트
<input type="checkbox"/>	20200818	처리완료	허가	수출허가(기술위)	UAE BNPP	소프트웨어	아랍에미리트

◎ 수출허가 변경신청

처리완료건의 업무조회 화면에서 수출허가정보 변경 신청 가능

업무진행정보

접수번호	담당자	진행상태	신청접수일자	처리완료예정일	완료일
20200228000001	이동민	처리완료	2020-02-28 21:28:09	2020-03-18 18:00:00	2020-02-28 22:01:14

신청인정보 품목정보 거래대상자 거래 및 연계정보 비교 필요첨부서류 **변경신청정보**

Step 07 변경신청정보 변경 전 후 내용 및 변경사유 입력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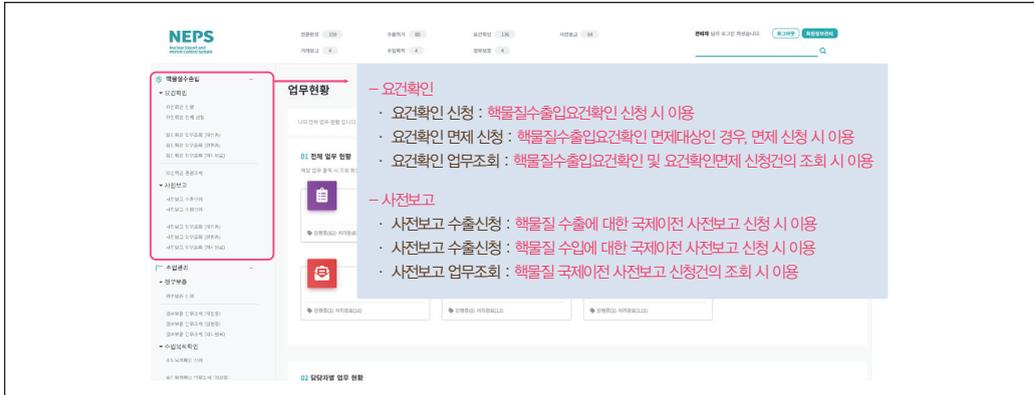
신청사유

입시저장 **신청서 접수** 신청서 삭제

신청서 접수 원료

2.3 핵물질 수출입

- 온라인 민원업무시스템에 접속 후, 좌측탭에서 핵물질수출입 관련 민원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신청절차

- 여러 품목의 핵물질을 하나의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품목에 대한 수출입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수출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④계획서 추가 탭을 눌러 수출입계획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품목들의 HS Code가 같은 경우, 서로 다른 품목이더라도 총액 및 수량을 더하여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가는 평균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정보 | 수출입구분 | 사전보고정보 | 수출입계획서 | 품목정보 | 거래대상자 | 거래정보 | 비교 | 필요첨부서류

Step 05 품목정보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HS Code는 우라늄에 기준으로 10자리로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품목용역 HS Code가 같은 경우, 서로 다른 품목이더라도 품역 및 수량을 더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가는 평균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 원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HS코드 ✓ 관세청 HS Code 검색 *HS코드는 직접입력(숫자) 또는 아래창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원하는 HS코드를 선택하세요

관세청에서 직접 검색 가능

품명명 ✓ *최대 입력 글자 수는 500글자입니다.

규격 ✓ *최대 입력 글자 수는 2,000글자입니다.

모델번호 및 모델명 *최대 입력 글자 수는 2,000글자입니다.

단가 ✓ 단가단위를 선택하세요 ▼

단위 및 수량 ✓ 수량단위를 선택하세요 ▼

가격 ✓ 가격단위를 선택하세요 ▼

임시저장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삭제

◀ 이전 | 다음 ▶

품목정보 입력

신청서정보 | 수출입구분 | 사전보고정보 | 수출입계획서 | 품목정보 | 거래대상자 | 거래정보 | 비교 | 필요첨부서류

Step 06 거래대상자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8 거래자관리 거래자관리 탭을 통해 거래대상자 추가

9 제조자 제조자를 선택하세요

구매처(수출) / 판매처(수입) 수출 시 구매처, 수입 시 판매처를 선택하세요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를 선택하세요 상기와 동일

임시저장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삭제

◀ 이전 | 다음 ▶

거래대상자 정보 입력

10 다음단계 이동

신청서정보 | 수출입구분 | 사전보고정보 | 수출입계획서 | 품목정보 | 거래대상자 | 거래정보 | 비교 | 필요첨부서류

Step 07 거래정보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11 신용장/계약서 번호 ✓ 신용장 번호를 입력하세요 | 계약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종사유일도(거래목적) ✓ *최대 입력 글자 수는 2,000글자입니다.

원산지 ✓ 원산지를 선택하세요

최종목적지국가(수출) / 공급국(수입) 수출 시 최종목적지 국가, 수입 시 공급국을 선택하세요

최종도착지(수출) / 도착지(수입) ✓ *최대 입력 글자 수는 500글자입니다.

결제조건 ✓ 결제조건을 선택하세요

가격조건 ✓ 가격조건을 선택하세요

임시저장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삭제

◀ 이전 | 다음 ▶

거래정보 입력

12 다음단계 이동

◎ 국제이전사전보고 신청절차

가입정보로 자동 가입됨

1 신청인정보

2 핵물질 정보 기입

3 다음단계 이동

Step 02 핵물질정보

원소명 원소명을 선택하세요

총량 화합물, 혼합물 형태의 경우 핵물질 함유량 기재 총량단위를 선택하세요

물리적 형태 물리적 형태를 선택하세요

화학적 조성 화학적 조성을 선택하세요

임시저장 신청서 접수 신청서 삭제

이전

다음

신청인정보 핵물질정보

4 거래정보 입력

5 다음단계 이동

Step 03 거래정보

총 유효유통기간

수출입 구분정보 수출

수출입 승인상태 수출입 승인상태를 선택하세요

대략적인 품목 수

국제이전 수송수단 수송수단을 선택하세요

수송수단 상세정보(선택정보)

수송용기의 형태 수송용기의 형태를 선택하세요

수송용기의 봉인방법 수송용기의 봉인방법을 선택하세요

도착국명 도착국명 및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발송예정일자

목적지 도착 예정일자

수령국이 책임을 인수할 시점 및 일자 수령국이 책임을 인수할 시점을 입력하세요

수령국이 책임을 인수할 일자들 선택하세요

해당 핵물질의 선적준비, 확인 및 그
양과 조성을 검증할 물질수지구역 및
일자

물질수지구역을 입력하세요

일자들 선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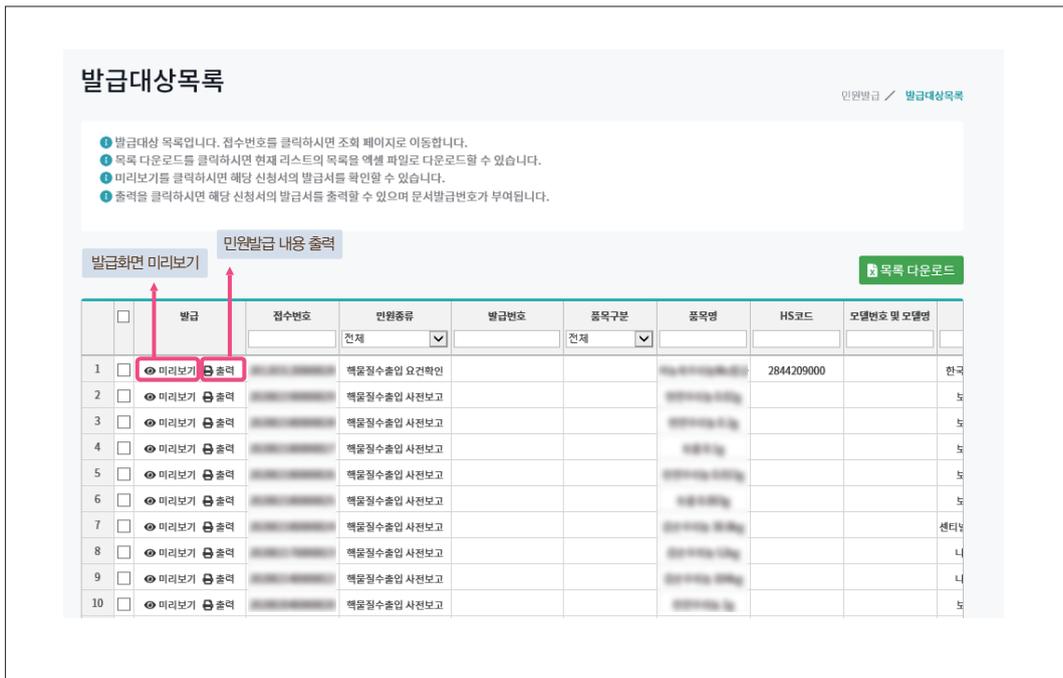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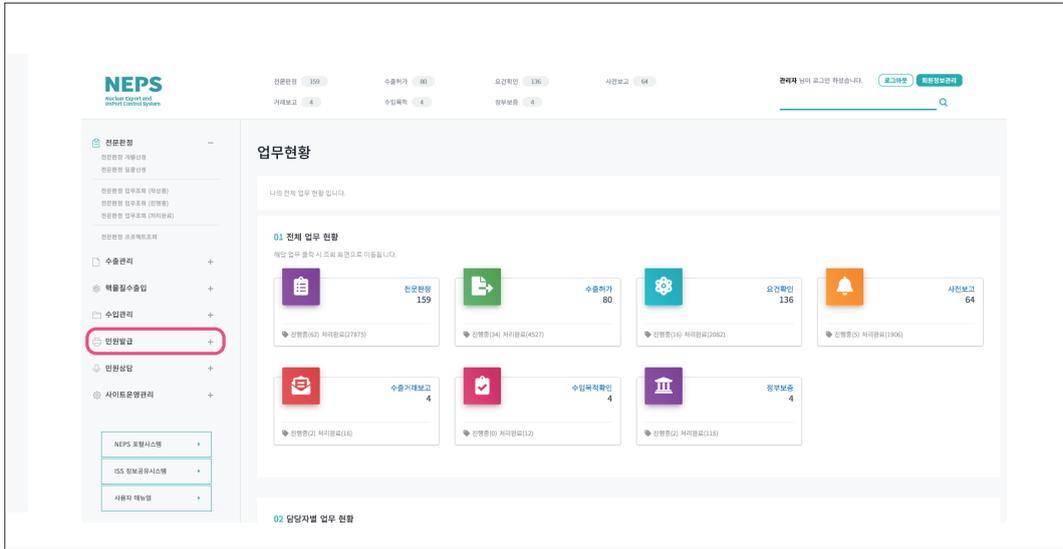
임시저장 신청서 접수 신청서 삭제

이전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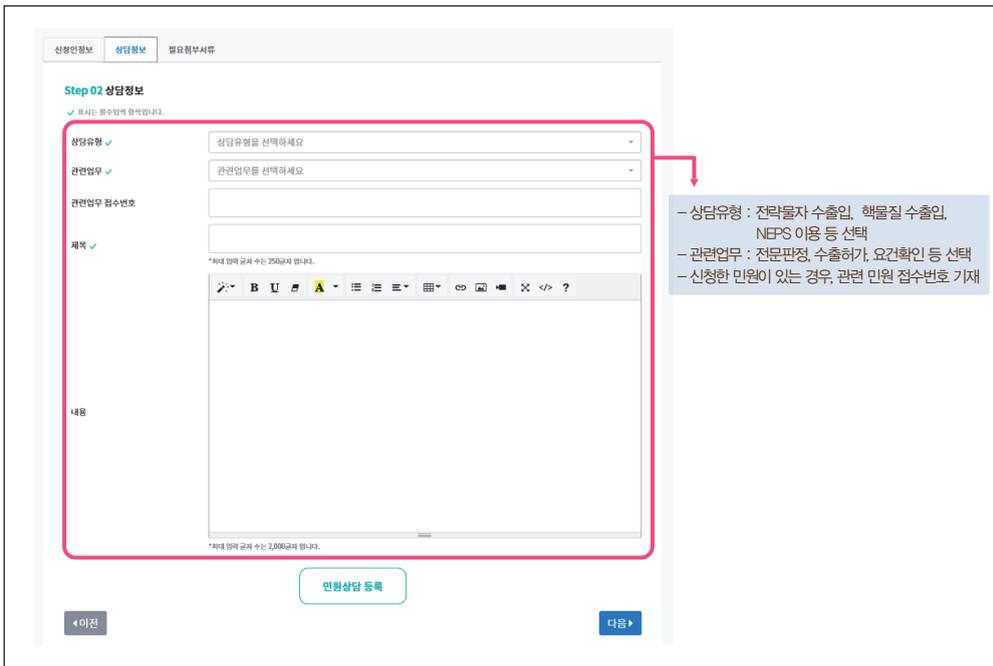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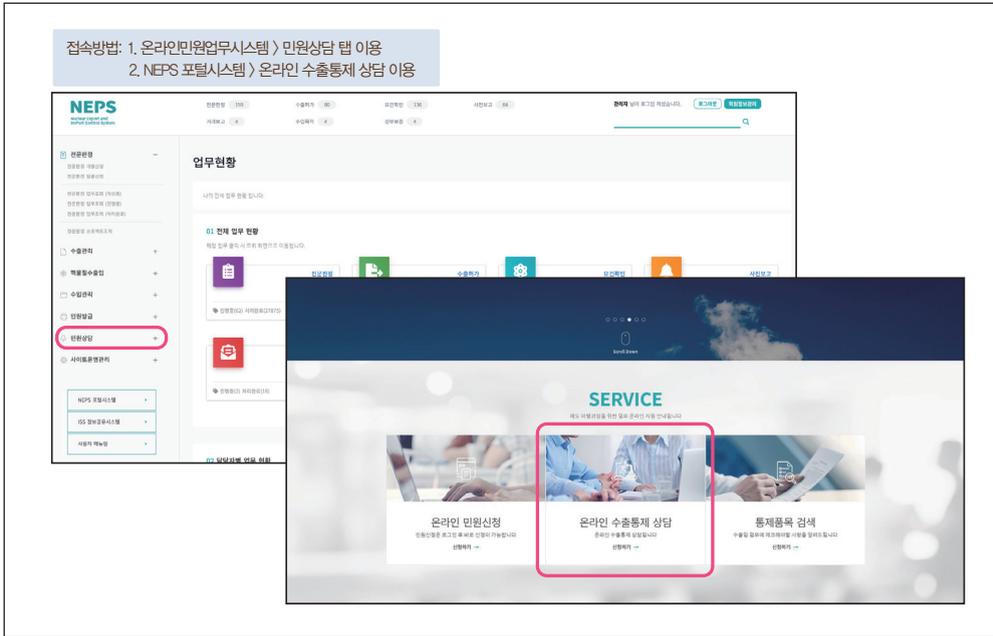
2.4 민원발급

- 민원신청 후 완료된 건은 민원발급-발급대상목록에서 조회하거나 출력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5 민원상담

- 민원상담 게시판을 통해 제도이행 및 NEPS 시스템 관련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글이 등록되면 KINAC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장 Q&A

1.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

- 1.1. 원자력전용품목
- 1.2. 전문판정
- 1.3. 수출허가
- 1.4. 핵물질수출입
- 1.5.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2. 기술이전 예시

- 2.1. 외국인 채용
- 2.2. 해외 출장
- 2.3. 학회 참석
- 2.4. 계약
- 2.5. 인터넷 기반
- 2.6. 외국인 교육

◎ Q&A 목록

1.1	원자력전용품목 p.05
Q1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2	원자력전용품목과 국제규제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3	수출통제식별번호(ECCN)는 무엇인가요?
Q4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요?
1.2	전문판정 p.78
Q5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어디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Q6	전문판정 결과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모두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어떡하죠?
Q7	원자력전용품목 '해당' 판정을 받은 기술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본을 수출하는 경우, 다시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Q8	원자력전용품목 '비해당' 판정을 받은 기술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본을 수출하는 경우, 다시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Q9	유효기간 내 전문판정 결과를 재사용 가능한가요?
1.3	수출허가 p.79
Q10	유효기간 내 발급받은 개별 수출허가를 여러번 사용 가능한가요?
Q11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수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Q12	정부보증 시 수출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Q13	수출허가 예외조건과 면제조건은 차이가 무엇인가요?
Q14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기술은 모두 수출허가 면제대상인가요?
Q1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Q16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17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18	기관/학교에 소속된 대학교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출허가신청은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관/학교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Q19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동 연구 및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전자 우편 발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매번 필요한가요?
1.4	핵물질 수출입 p.82
Q20	핵물질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1	유효 kg이 무엇인가요?
Q22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발급 이후에 핵물질 수출입 정보(예) HS,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거래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 등)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새롭게 재신청해야 하나요?
Q23	사용허가 면제대상 핵연료물질은 무엇인가요?
Q24	사용신고 면제대상 핵연료물질은 무엇인가요?
Q25	보고 면제대상 핵물질은 무엇인가요?

1.5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p.84
Q26.	우리나라와 어떤 국가들과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나요?
Q27.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협정대상 품목이 있나요?
2.1	외국인 채용 p.85
Q28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29	우리 회사 직원의 일부는 외국인입니다. 사내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인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30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31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2	해외 출장 p.86
Q32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33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산업체·학교·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A국가로 출장을 가서 그 곳에서 설계도를 작성하여 B국가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34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출장을 나간 경우, 이 직원에게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전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35	해외 출장 시 기술을 노트북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기술자료를 소지하여 나가는 경우,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2.3	학회 참석 p.87
Q36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의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37	해외의 국제학회회의에서 특정 전략물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곳에 참석한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2.4	계약 p.88
Q38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39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40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41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이전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42	외국에 있는 원자력 기관과 기술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을 근거로 관련 기술자료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하여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43	A국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A국가의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44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의 계약을 위해 제품 카탈로그 전송, 제품설명회 개최 및 담당자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45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내용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전자 우편 발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46	우리 연구소가 보유한 전략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S/W를 해외 A기업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기술보유 주체가 아직 우리 연구소인데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47	우리 연구소의 원자력전용품목과 관련된 시험 데이터나 구상 중인 제품 이미지를 외국기업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2.5	인터넷 기반 p.90
Q48	웹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49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6	외국인 교육 p.91
Q50	외국인의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51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52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53	국내 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Q54	국내 대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1 원자력 수출입통제 제도

1.1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품목은 용도에 따라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으로 구분됩니다. 국내의 경우, 각 품목의 소관부처가 다르며 이에 따라 수출 시 이행해야 하는 세부절차도 상이합니다.
-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대상입니다.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전문기관(KINAC)에 '전문판정' 을 신청하여 원자력전용품목 여부를 확인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 시 관련 민원은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중용도품목은 일반 산업용도로 제작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상입니다. 수출 시 관련 민원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원자력전용품목 (Trigger List)	이중용도품목 (Dual-use Items)
의미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과 핵물질의 생산 (변환, 농축, 핵연료 가공, 원자로 가동, 재처리 등 핵연료주기)과 관련된 시설, 장비, 물질 등	일반 산업용도로 제작되었으나 핵개발 프로그램 또는 핵연료주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소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판정 담당: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판정 담당: KOSTI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제도	전문판정 ↓ 수출허가	전문판정 or 자가판정 ↓ 수출허가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	 NEPS(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 www.neps.go.kr	 YESTRADE(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원자력전용품목과 국제규제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원자력전용품목과 국제규제물자는 통제품목이 거의 유사하나 그 근간이 되는 국제체제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시 준수해야 할 관련 제도 및 절차가 다릅니다.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그룹(NSG)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국제규제물자는 IAEA 안전조치협정,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 등 원자력 관련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 및 통제됩니다. 통제시점(수출, 수입) 및 통제품목에 따라 준수해야 할 국내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NSWER

분류	통제시점 및 통제품목		관련 제도				양자 원자력 협정 의무
			전문판정	수출허가	국제이전 사전보고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원자력 전용품목	수출	핵물질	v	v	v		수출입품목이 협정대상품목인 경우 협정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핵물질 외	v	v			
	수입	핵물질			v	v	
		핵물질 외			v (원자력안전 위원회 요청시)		
국제 규제물자	수출	핵물질			v	v	
		핵물질 외			v (매분기별)		
	수입	핵물질			v	v	
		핵물질 외			v (원자력안전 위원회 요청시)		

※ 단, 원자력전용품목과 국제규제물자 모두에 해당되는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은 생략하고 수출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03

수출통제식별번호(ECCN)는 무엇인가요?

- ECCN은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략물자를 수출입통제할 때 이 번호체계를 사용하여 세부품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대범주(0~9)로 분류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5자리 번호가 구성되며 그 규칙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원자력전용품목은 5개 범주(0A~0E)로 분류되며, 품목군 내에서 일련번호로 구분합니다.
- 국내 전문판정서에는 ECCN을 ‘통제번호(Classification Number)’ 라고 기재하여 판정결과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ANSWER

첫째자리(숫자) 카테고리의 분류	둘째자리(알파벳) 품목군의 구분	셋째자리(숫자) 통제이유	넷째자리 이하(숫자) 품목의 일련번호
0:핵관련, 무기 관련등	A:기기,조립품 및 부품	0:NS(국가안보) (WAI중용도 및 방산물자 NSGI중용도 및 전용품목 포함)	
1:첨단 재료, 화학, 생물	B:시험장비, 검사장비 및 제조장비	1:MT (미사일관련 확산방지)	
2:재료가공	C:재료	2:NP (핵확산방지)	
3:일렉트로닉스	D:소프트웨어	3:CB (화학/생물무기 관련 확산방지)	
4:컴퓨터	E:기술	9:미국의 독자적인 통제 (AT, CC, PS, SS, UN)	
5:P1 통신기기, P2 암호장치			
6:센서와 레이저			
7:항법과 항공전자			
8:해양 관련			
9:추진장치			

04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요?

- 원자력전용품목 중 ‘핵물질’ 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이전사전보고 및 핵물질 수입요건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ANSWER

- 원자력전용품목 중 핵물질이 아닌 품목(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수출국 정부가 수입품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 또는 수입목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NEPS를 통해 정부보증 및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품목이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대상품목인 경우, 협정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2 전문판정

05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어디에 전문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 품목의 전문판정 담당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략물자관리원에 모두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각 통제품목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시스템:

· 원자력전용품목 ⇒ NEPS(www.neps.go.kr) · 이중용도품목 ⇒ YESTRADE(www.yestrade.go.kr)

06 전문판정 결과 원자력전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 모두 '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어떡하죠?

ANSWER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07 원자력전용품목 '해당' 판정을 받은 기술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본을 수출하는 경우, 다시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 네. 전문판정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자력전용품목 '해당' 판정을 받은 품목에 개정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간주합니다.

○ 단, UAE BNPP 사업 하 이전되는 기술에 한하여, 개정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기 '해당' 판정 받은 문서에 추후 개정 및 변경 등이 발생하여도 원자력전용품목 '해당' 한다고 간주합니다. 플랜트 허가 이후 사후관리가 아닌 분기별 보고로 변경(신범석 연구원 문의 · 협의 필요)

08 원자력전용품목 '비해당' 판정을 받은 기술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본을 수출하는 경우, 다시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 네. 전문판정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자력전용품목 '비해당' 판정을 받은 품목에 개정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전문판정 재신청을 하거나 KINA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존 문서에서 표지 변경, 결재서명 추가 등 미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비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 유효기간 내 전문판정 결과를 재사용 가능한가요?

ANSWER

○ 네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청건이 개정 또는 변경 된 경우(ex. 기술문서 개정본), 최초 신청건과 동일한 품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 1) 한달 전, 전문판정에서 '해당' 판정을 받은 품목A를 수출허가를 득한 후 캐나다의 B기관에 수출하였습니다. 아직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A와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B기관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전문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재판정이 불필요합니다. 동일 품목을 재수출하는 경우, 유효기간내 해당 판정결과를 재사용하여 수출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 2) 한달 전, 전문판정에서 '해당' 판정을 받은 품목A를 수출허가를 득한 후 캐나다의 B기관에 수출하였습니다. 아직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A와 동일한 품목을 미국의 C기관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전문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재판정이 불필요합니다. 수출국가가 및 최종 사용자가 달라져도 유효기간 내 판정결과를 재사용하여 수출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3 수출허가



10 유효기간 내 발급받은 개별 수출허가를 여러번 사용 가능한가요?

ANSWER

- 아니요,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품목,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에 대하여 1회 수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수출후, 동일품목을 다시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전문판정 결과는 수출허가 신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11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수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ANSWER

- 아니요, 전문판정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수출허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단, 수출허가 신청시점에는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12 정부보증 시 수출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 수출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정부보증 요청서 작성시 수출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출허가 예외조건과 면제조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 수출허가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대상(전략물자)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예외조건의 경우 '기술'에 한정하지만 면제조건의 경우 '물품'과 '기술'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 '물품' 면제 시,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기술은 모두 수출허가 면제대상인가요?

ANSWER

- 단순히 최종수령자가 국제기구라고 해서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정부와 국제기구 간 체결된 협력협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되는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 세부내용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전문판정 신청단계에서 미리 수출허가 면제가 적용 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하는 물품 가격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3년간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위반 범위	벌칙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경유·환적 중개한 자 또는 미수범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9배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 제 1항, 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없이 수출, 경유·환적, 중개한 자 또는 미수범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수출, 수입가격을 위조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 제 2항, 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자 •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위반자 	3년 이내의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금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없이 수출, 경유·환적, 중개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 벌금형은 양벌규정(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과 가능) • 허가의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반자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에게 8시간 이내 교육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통제기술 관리기관)	대외무역법 제49조 고시 93항

16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허가(“상황 허가”라고 함)를 받아야 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12가지 의심징후를 확인하는 경우 수출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12가지 의심징후
 -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ANSWER



17 설치, 운용,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 통상적으로 제품의 판매 시에는 동 제품의 설치, 설치 후 운용 및 기타 품질보증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판매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 판매와 수반되는 일련의 기본적 활동들을 설치·운용·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제품)의 수출허가는 당해 제품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도 동시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다만,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전략물자(제품)의 설치, 운용, 유지를 위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이 단순 매뉴얼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전략물자를 취급하기 위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설치, 운용을 위한 기술인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관/학교에 소속된 대학교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출허가신청은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관/학교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 개인자격으로서 회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해 기술을 이전할 경우 개인자격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학교소유 또는 관리대상의 기술을 타 기관으로의 이전을 위해 기관/학교를 대표해서 발표 및 회의 등을 참석하는 경우에는 기관/학교 명의의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19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동 연구 및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전자 우편 발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매번 필요한가요?

ANSWER

- 이전내용이 명확하고 단기간에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개별수출허가를 받고 이전하시면 되고, 이전내용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에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으시고 이전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 시 기재한 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1.4 핵물질 수출입



핵물질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 수출하려는 핵물질이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면 수출허가(☞ p.16)를,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대상이면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p.27)을 신청합니다. 이때, 국제이전 사전 보고(☞ p.26)도 필요합니다.
- 수출대상 핵물질이 양국협정대상품목(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포함된 경우)이면, 수출 전에 한-미, 한-카, 한-호 협정에 따라 직접이전 사전통보(예를 들어 미국산 핵물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p.36) 또는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p.38, 39), 재이전 사전통보/사전동의 요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출후에는 반드시 선적통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수출대상 핵물질이 양국협정대상품목이 아니고 수입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경우, 원안위는 수입국 정부에 정부보증을 요청하여 정부보증을 수령 후 수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따라서, 서면확인이나 서면동의, 정부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의 발급 소요일(수개월 소요)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kg이 무엇인가요?

ANSWER

원소	농축도	유효킬로그램	1유효킬로그램이 되는중량
Pu	N/A	중량(Kg)	1kg
U	1%이상	(농축도) ² × 중량(kg)	(농축도) ⁻² kg
	0.5%초과, 1%미만	0.0001 × 중량(kg)	10,000kg
	0.5%이하	0.00005 × 중량(kg)	20,000kg
Th	0.5%이하	0.00005 × 중량(kg)	20,000kg

ex)농축도 0.7% 우라늄 500 kg을 수입할 경우, $0.0001 \times 500 \text{ kg} = 0.05$ 유효kg이 되므로 포장해체 2주 전까지 국제이전사전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ex)농축도 5% 우라늄 500 kg을 수출할 경우, $(0.05)^2 \times 500 \text{ kg} = 1.25$ 유효kg이 되므로 선적 4주 전까지 국제이전사전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발급 이후에 핵물질 수출입 정보('예' HS,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거래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 등)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새롭게 재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 재신청할 필요 없이 기 발급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을 통해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변경사항, 변경사유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3 사용허가 면제대상 핵연료물질은 무엇인가요?

- 사용허가 면제대상 핵연료 물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1조)
 -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물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이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물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 제1호 또는 제 2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 토륨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 제4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 그 밖에 방사선 장애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ANSWER



- *U-233, U-235 및 플라토늄의 수량이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 방사선조사기의 차폐용 우라늄
- *화학분석용 천연 토륨(단위포장 당 토륨 100g 이하)
- *진공관 또는 실내 전등(품목당 토륨 함유량 50mg 이하)
- *살균용 또는 옥와용 전등(품목당 토륨 함유량 2g 이하)
- *용접용 또는 가스등용 심지(품목당 토륨 방사능 700Bq/g 이하)
- *니켈, 텅스텐 또는 마그네슘 합금의 토륨 중량비 (w/o)가 4 이하로 제작된 제품
- *도금물질의 토륨중량비 (w/o)가 30 이하인 광학렌즈
- *자연상태의 방사능을 농축하지 않은 천연수

※ 사용허가 대상에 대한 분류 및 허가증 발급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관입니다.



24 사용신고 면제대상 핵연료물질은 무엇인가요?

- 사용신고 면제대상 핵연료물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 56조)
 - *방사능 농도가 74Bq/g (고체상의 경우 370Bq/g) 이하인 물질
 - * $(\text{우라늄의 양} \times 3 + \text{토륨의 양})$ 이 900g이하인 물질

ANSWER

※ 사용신고 대상에 대한 분류 및 신고확인증 발급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관입니다.



25 보고 면제대상 핵물질은 무엇인가요?

- 핵연료의 가공이나 동위원소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에 이르지 못한 우라늄 또는 토륨 중, 비원자력 용도로서 '최종단계' 상태로 수출입 되는 경우
 - ex)비원자력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단계' 상태가 아닌 '물질' 상태로 수출입될 경우는 보고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1.5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



우리나라와 어떤 국가들과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나요?

- 우리나라는 총 29개국과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대상국가 및 협정 발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자협정 체결 현황(총 29개국)

구분	체결국가	국문	발효일
1	미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전면개정)	2015년 11월 25일
2	캐나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6년 01월 26일
3	호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1976년 05월 02일
4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2년 01월 21일
5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0년 01월 12일
6	남아공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1년 02월 24일
7	독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1986년 04월 11일
8	러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1999년 10월 08일
9	루마니아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분야에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4년 09월 06일
10	멕시코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3년 07월 14일
11	베트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1997년 01월 06일
12	벨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왕국 정부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81년 03월 03일
13	브라질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5년 07월 25일
14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2년 08월 14일
15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1997년 09월 19일
16	영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1991년 11월 27일
17	요르단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9년 05월 05일
18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7년 06월 11일
19	이집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2년 06월 24일
20	인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1년 10월 12일
21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1년 10월 24일
22	중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1995년 02월 11일
23	체코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1년 06월 01일
24	칠레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06년 09월 03일
25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0년 08월 23일
26	터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1999년 06월 04일
27	프랑스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81년 04월 04일
28	핀란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5년 01월 01일
29	헝가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4년 01월 18일

ANSWER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협정대상 품목이 있나요?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대상품목 중 삼중수소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카 원자력협력협정 대상품목 중 백금 촉매, 삼중수소, 삼중수소 관련 설비 및 공장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상기 협정대상품목을 협정 상대국에게 수출입하거나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사전통보, 선적통보, 재이전 사전통보/사전동의 요청 등의 협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상기 품목을 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협정대상 여부 및 이행사항을 문의하여 협정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 내 협정 관련 기능은 2021년 오픈 예정입니다. 시스템 정식 운영 전까지는 행정양정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ANSWER

2 기술이전 사례

2.1 외국인 채용



학교, 회사,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채용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외국인이 수행하거나 습득할 원자력 기술 관련 유형 자료(전자파일 포함),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원자력 기술 관련 무형적 기술지원(구두 등)도 수출허가 대상이므로 채용 후 학교/회사/연구소 등에서 수행하거나 습득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반드시 정부에 전문판정 또는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된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직원의 일부는 외국인입니다. 사내에서 전략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인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전략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도를 적용받아 수출통제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외국인이 참여하거나 습득할 원자력 기술 관련 유형 자료(전자파일 포함),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원자력 기술 관련 무형적 기술지원(구두 등)도 수출허가 대상이므로 외국인의 참여가 예상될 경우, 외국인이 참여하게 되는 활동과 범위,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합니다. 외국인이 연구활동에 참여한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국인의 연구활동 참여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경우, 입학서류 제출 후 합격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 활동이 개시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1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 활동 및 용역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원자력 기술 관련 유형 자료(전자파일 포함하여 연구자료, 논문 등)와 원자력 기술 관련 무형적 기술지원(세미나, 회의, 자문 등)도 수출허가 대상이므로 해외 연구기관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동/위탁연구 계약 체결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바로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바로 전문판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 해외 출장



32 해외출장을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기술이전이 예상되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 출장 전에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이전되는 기술이 없거나 외국인과의 접촉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부분의 원자력 관련 해외출장은 외국으로 자료가 이전되거나 외국인과의 접촉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출장이 계획되고 회사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정부에 전문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외출장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출장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3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산업체 · 학교 ·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A국가로 출장을 가서 그 곳에서 설계도를 작성하여 B국가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우리 국민이 원자력전용기술을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수출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 출장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4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출장을 나간 경우, 이 직원에게 전략기술 관련 자료를 전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국내에서 국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출통제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업체)에게 전략기술을 설명, 자문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에게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본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 · 기업체, 접촉하는 외국인 등을 감안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5 해외 출장 시 기술을 노트북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기술자료를 소지하여 나가는 경우,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국내에서 국외로 기술자료를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별도 기술 자료를 휴대하여 나가는 경우, 기술이전에 해당되고 체류국이 우려국가, 우려기업이나 개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출장자 개인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술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3 학회 참석

36 해외학회 및 전시회에서 비공개 형태의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학회 또는 전시회 참석이 계획되어 있다면, 바로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공개가 목적인 학회 및 전시회라면 수출허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대상이 특정화되거나 제한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학회/전시회에서의 별도 세미나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 해외학회 및 전시회가 개최된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외 학회 및 전시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행사 개최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7 해외의 국제학술회의에서 특정 전략물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곳에 참석한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연구결과를 학술회의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예외대상입니다. 또한, 외국 연구자들과 토론 역시 동 학술회의에의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발표한 내용을 대상으로 토론할 경우 '이미 공개된 기술'과 관련된 토론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동국제학술회의가 특정의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출허가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 단, 민감기술(농축 및 재처리)과 관련된 기술이라면 반드시 전문판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2.4 계약



특허 등 기술매매를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특허 및 기술매매 계약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에서 제외 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특허 및 기술매매 계약체결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허 및 기술매매 계약체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해외 원자력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핀란드 등 원전 건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에서는 계약전에 이전되는 입찰서나 관련 자료, 회의나 세미나, 클라우드 또는 웹에 저장된 형태의 자료 등이 모두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찰서를 제출하는데 그 전에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 원자력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자력사업 계약체결(입찰서 제출)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입찰서 제출)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해외 지점간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본점과 해외 지점 또는 반대의 경우(해외본점 국내 지점)에 반드시 계약 전에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 체결이 없이 본점과 지점간 기술이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 ※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술이전 계약체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1 해외 원자력시설에서의 검사, 교체, 수리, 유지보수 등을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설계변경 자료, 검사, 교체, 수리, 자료, 운전 노하우, 운영지원, 기술지원, 교육 등이 수출허가 대상이므로 외국에서 검사, 교육, 훈련, 자문 등이 예상될 경우 수출허가 등 이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검사·수리 등 계약체결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수리 등 계약체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2 외국에 있는 원자력 기관과 기술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을 근거로 관련 기술자료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하여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전략기술 관련 자료의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은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반드시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의 경우, 계약서가 완성되기 전 수많은 기술이전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성사 이전이라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3 A국가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A국가의 기술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기술이전의 유형 중에는 연수와 같은 기술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수의 내용에 전략기술이 포함된다면 반드시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수내용이 전략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4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의 계약을 위해 제품 카탈로그 전송, 제품설명회 개최 및 담당자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전략물자 품목의 계약은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품 카탈로그가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누구나 제약 없이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기술로 볼 수 있으므로, 수출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비공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비공개 설명회인 경우에는 전략기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45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전자 우편 발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전략기술 관련 자료의 이전 및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반드시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의 경우, 계약서가 완성되기 전 수많은 기술이전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성사 이전이라도 수출허가를 받는 것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46 우리 연구소가 보유한 전략기술 또는 전략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S/W를 해외 A기업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기술보유 주체가 아직 우리 연구소인데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소스코드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전된 소프트웨어는 이미 전략기술이며,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다른 전략물자를 개발·생산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라이선스 번호만 제공하더라도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것 또는 공급자의 도움 없이 사용자가 설치토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는 수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47 우리 연구소의 원자력전용품목과 관련된 시험 데이터나 구상 중인 제품 이미지를 외국기업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 원자력전용품목과 관련된 시험 데이터나 제품 이미지는 전략기술로서 수출허가 대상이 됩니다. 외국기업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구상중이면 수출허가를 신청하시기 전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시어 수출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인터넷 기반



48 웹페이지, 서버, 클라우드 등 웹기반 서비스에 기술 업로드 등을 통한 기술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최근 기술의 발달로 웹상에 게시되거나 저장되어 이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팸플릿, 카탈로그, 논문, 공개 세미나 자료 등)는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를 업로드 하기 전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자료 업로드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9 인허가를 위한 기술제공 및 인터넷 게재를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해외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 등 저명한 기관의 원자로 인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APR14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외국관계자와 협의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NSWER

- 인터넷 게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수출허가 후 민감한 자료를 제외하는 선행작업이 요구됩니다.
- ※ 인허가 관련 계약체결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허가 관련 계약체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6 외국인 교육



50 외국인의 국내 학교, 회사,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외국인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바로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순한 방문이고 유무형의 기술이전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문판정시 “비해당”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연관 관계가 없는 국가, 단체, 개인의 단순한 방문일지라도 반드시 인적사항 확인을 통해 우려거래자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 ※ 외국인 방문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국인 방문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외국인 방문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1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설명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외국인에게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될 경우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원자력 기술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ANSWER

- ※ 기업체나 개인 대부분이,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기술자료나 유·무형의 지원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문의하시거나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구두 또는 화면을 통해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기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자문 등을 통한 기술 이전도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외국인 대상 교육, 훈련, 자문 등이 예상될 경우 수출허가 등 이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참여하게 되는 활동과 범위,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합니다.

ANSWER

- ※ 교육·훈련 관련 계약이 체결된 후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수입국가, 기업체, 개인이 우려국가 또는 우려업체, 개인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훈련 관련 계약 체결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최소 30일 이전에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외국인의 유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략기술이 이전된다면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도를 적용받아 수출통제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기술 이전이 없더라도, 우려거래자 여부를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국내 대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학부수준의 강의 및 교육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기술로 보기 때문에 전략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박사 이상의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NSWER

8장 부록

-
1. 용어정리
 2. 원자력전용품목 세부품목
 3. 수출허가 필요 체크리스트

1 용어정리

국제규제물자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는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

대량파괴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단시간에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

상황허가

전략물자가 아닌 물자 중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

수출허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및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는 행위

우려거래자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국제안보를 위하여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개인 혹은 단체. UN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서 선별함.

원자력 수출입통제

핵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이나 핵물질의 수출입 시, 사업자가 각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입제도를 이행 하도록 하는 활동

자가판정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출자가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

전략기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와 운반체계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전략물자

대량파괴무기(핵무기,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전문판정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물품,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기관(KINAC)에 의뢰하여 판정하는 제도

중개허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

최종사용자

전략물자 이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전략물자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자

핵물질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의미함

핵비확산조약(NPT)

IAEA 발족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IAEA 협정이 현실적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된 국제조약.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보유국이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1970년 발효)

핵연료물질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우라늄광, 토륨광 등)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핵물질수출입 요건확인

모든 핵물질의 수입 또는 비 전략물자 핵물질의 수출 시, 수출입 요건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 행위

핵물질 국제이전 사전보고

모든 핵물질의 수출입 시, 관련 수출입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행위

핵연료주기

우라늄의 채광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로 장전 및 운전, 최종적으로 영구 처분될 때까지의 일련의 순환과정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국제사회에서 우려국가나 테러조직의 전략물자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한 4개의 체제로서 재래식무기를 관할하는 WA, 미사일 및 운반체계를 관할하는 MTCR, 생화학무기를 관할하는 AG, 그리고 핵무기를 관할하는 NSG를 의미함

NEPS (Nuclear Export and Import Control System)

원자력 분야의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제도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민원의 신청, 처리, 발급 등을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출입통제 종합관리시스템

2 원자력전용품목 세부 품목

통제번호	항목	품목	세부 품목
0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0A001 (NT1)	원자로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와 부품		
a		원자로	
b		원자로 용기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포함
c		핵연료 교환기	
d		원자로 제어봉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어봉 ● 지지구조물 ● 부착대 ● 제어봉운전 기계장치 ● 제어봉 안내관
e		원자로 압력관	
f		핵연료 피복관	
g		1차 냉각재용 펌프 혹은 순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봉 시스템 ● Canned-Driven 펌프 ● 관성질량 시스템
h		원자로 내부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심 지지대 ● 핵연료 채널 ● 열중성자 차폐 ● 배플 ● 노심 격자판 ● 배분판
i		열교환기	● 증기발생기
j		중성자 검출기	● 노심내 중성자속 검출장치
k		외부 열 차폐체	
0B0B 시험, 검사 및 생산장비			
0B001 (NM2.5)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그리고 특수 핵분열성물질 등의 동위원소 분리공장 및 그 용도로 전용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와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		
a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그리고 특수 핵분열성물질의 동위원소분리를 위해 전용 설계된 공장으로 다음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원심 분리공장 2. 가스확산 분리공장 3. 공기역학 분리공장 4. 화학적교환 분리공장 5. 이온교환 분리공장 6. 원자력증기레이저이용 동위원소분리(AVLIS) 공장 7. 분자레이저 이용 동위원소 분리(MLIS)공장 8. 플라즈마 분리공장 9. 전자기 분리공장

b	가스원심분리기와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조립체 및 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원심 분리기 2. 회전자 조립체 3. 회전자 관 4. 링 또는 벨로우즈 5. 배플 6. 상단캡/하단캡 7. 고정부품(자기 지지 베어링) 8. 베어링 및 댐퍼 9. 분자 펌프 10. 모터 고정자 11. 원심분리기 하우징 또는 용기 12. 스쿠프 13. 특수 차단 및 제어 밸브 14. 주파수변환기 15. 지름 10~160밀리미터의 벨로우즈밸브로서 육불화우라늄의 부식성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된 것
c	가스확산농축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조립체·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확산 막 및 막 재료 2. 확산 하우징 3. 압축기 및 가스송풍기 4. 회전축 밀봉장치 5. UF6 냉각 열교환기 6. 특수 차단 및 제어밸브
d	공기역학 농축 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리노즐 2. 소용돌이관 3. 압축기 및 가스송풍기 4. 회전축 밀봉장치 5. 가스냉각용 열교환기 6. 하우징 7. 특수차단 및 제어밸브 8. UF6/운반가스 분리장치
e	화학적 교환 농축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체-액체 교환 탑 2. 액체-액체 원심 접촉기 3. 전기 화학적 환원셀 4. 우라늄환원 계통 및 장비 5. 급송 계통 6. 우라늄 산화계통
f	이온교환 농축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속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속반응 이온교환 수지/흡착제 2. 이온교환탑 3. 이온교환 환류시스템
g	원자증기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AVLIS) 공정을 위해 전용설계, 준비된 장비와 부품으로 다음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라늄 증기화 계통 2. 액체 혹은 증기 우라늄 금속 처리 계통 및 부품 3. 우라늄 금속생성물 및 잔재물 수집기 4. 분리모듈 하우징 5. 레이저 계통
h	분자레이저 동위원소 분리공정과 동위원소 선택적 레이저 활성화에 의한 화학반응법을 위해 특수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및 부품으로 다음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음속 팽창 노즐 2. '생성물' 혹은 '잔재물' 수집기 3. UF6/운반가스 압축기 4. 회전축 밀봉 5. 불소화 계통 6. UF6/운반가스 분리계통 7. 레이저 계통
i	플라즈마 분리 농축 공장용용도로 특별히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이크로 에너지원 및 안테나 2. 이온 여기화 코일 3. 우라늄 플라즈마 발생시스템 4. 삭제 5. 우라늄 금속 생성물 및 잔재물 수집기 조립체 6. 분리모듈 하우징
j	전자기 농축공장용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계통·장비·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온 소스 2. 이온 수집기 3. 진공 하우징 4. 자극 편 5. 고압 전원공급장치 6. 자기력 공급장치

OB002	동위원소 분리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보조장치·장비·부품	
a	농축공정으로 UF6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급송 고온고압로, 오븐 또는 계통	
b	농축공정에서부터 가열된 상태로 배출된 UF6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응축 또는 냉각 트랩	
c	UF6를 액상 또는 고체상으로 변환하여 압축에 의해 농축공정으로부터 UF6를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고화 또는 액화 저장소	
d	UF6 생성물 및 잔재물을 용기로 담는 데 저장소로 회수한 UF6 생성물 및 잔재물을 용기에 담기 위한 장치	
e	헤더 파이핑 계통	
f	진공계통 및 펌프	
g	UF6 질량분석기/이온 소스	
OB003 (NT7.1)	우라늄 변환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계통	
a	우라늄 정광을 UO3로변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b	UO3를 UF6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계통	
c	UO3를 UO2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d	UO2를 UF4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e	UF4를 UF6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f	UF4를 우라늄 금속으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g	UF6를 UO2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h	UF6를 UF4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i	UO2를 UCL4로 변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OB004 (NT6)	중수, 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을 생산 또는 농축하기 위한 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a	중수, 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 다음의 것	1. 물-황화수소 교환 공장 2. 암모니아 수소교환 공장
b	장비 및 부품으로 다음의 것	1. 물-황화수소 교환탑 2. 송풍기 및 압축기 3.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4. 탑 내장장치 및 단 펌프 5. 암모니아 분해장치 6. 적외선 흡수 분석기 7. 촉매작용 버너 8. 중수 고순도화 장치 완성품 또는 그를 위한 탑 9. 암모니아 합성용 전환기 혹은 합성기
OB005 (NT4, M2.4)	핵연료 가공공장과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핵물질 생산공정과 직접 접하거나, 직접 가공, 제어하는 장비	소결체 검사기 등
	피복재내에 핵물질을 밀봉하는 장비	자동 용접기 등
	피복 또는 밀봉상태를 검사하는 장비	X선 시험 장비 헬륨 누출 감시 장비 등
	밀봉된 핵연료의 마무리를 검사하는 장비	감마선 조사 장비 등
	원자로 핵연료를 조립하는 장비	

0B006 (NT3)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a	조사후 원자로 핵연료이 재처리를 위한 공장	조사후 핵연료, 주요 핵물질, 그리고 핵분열생성물의 처리공정과 직접 접하거나 이를 직접 제어하는 장비 및 부품
b	조사후 핵연료 절단기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원격조작 장비
c	용해조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임계 안전용기
d	용매 추출기 또는 용매 추출장비	재처리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용매 추출기
e	화학약품 취급용기 또는 저장조	재처리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약품을 취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설 또는 저장조
f	공정제어를 위한 중성자 계측계통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공장 내 자동 공정제어계통에 통합 및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중성자 계측계통
0B007 (NT7.2)	플루토늄 변환공장 및 그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a	플루토늄 질산염을 플루토늄 산화물로 변환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계통	
b	금속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설비	
0C	물질	
0C001 (NM1.1)	핵연료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동위원소의 혼합물을 함유 하고 있는 우라늄 ● 동위원소 235가 감소된 우라늄 ● 토륨(thorium) ● 금속, 합금, 화합물 또는 농축된 상기 a-c 물질중 하나 이상 함유 물질 ● IAEA에서 정하는 농축도로 상기 a-c 물질중 하나이상 함유물질 ● IAEA 이사회가 정하는 물질
0C002 (NM1.2)	특수 핵분열성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루토늄 239 ● 우라늄 233 ●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 ● 상기 a-c 물질중 하나이상 함유 물질 ● IAEA 이사회가 정하는 핵물질
0C003 (NT2.1)	중수소 및 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소·중수 또는 중수소 화합물 (중수소 대 수소의 원자비가 1:50,000을 초과하는 것)
0C004 (NT2.2)	원자로급 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A001에서 정의한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으로서 5ppm 보다 높은 순도와, 밀도 1.50g/cm³을 초과
0D	소프트웨어	
		<p>“마이크로프로그램” - 특정 저장장치에 저장된, 명령레지스터에 참조명령을 입력하여 실행되는 기본명령어의 시퀀스(sequence)</p> <p>“프로그램” - 전자 계산기로 실행가능한 형태인, 혹은 형태로 변환가능한 프로세스(process)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시퀀스(sequence)</p>
0E	기술	
0E001 (NT1.8)	상기품목과 관련된 기술 0E001.1 재처리(0B006)·농축(0B001,0B002)·중수제조시설(0B004) 또는 이들 주요 부품의 설계·건설·제조·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 0E001.2 핵물질(0C001, 0C002)·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0A001)·원자로 용 비핵물질(0C003, 0C004)·핵연료요소 가공공장(0B005) 또는 이들 주요부품의 설계·건설·제조·운전 또는 보수 등에 관한 기술(0E)	

3 수출허가 필요 체크리스트

1. 기술 진단 (No 인 경우 이전)

관련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에 해당하는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OA~OD 품목의 개발, 생산, 사용 기술

Yes No

- ☞ Yes 인 경우, NEPS를 통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 ☞ No 인 경우, 허가 없이 이전 가능(NEPS를 통해 사전판정 신청을 권장)

2. 기술이전 진단

기술자료를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는가?

Yes No

- 외국인에게 기술자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연구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회의, 훈련하는가?
 - 외국인을 채용하는가?
 -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가?

Yes No

참여 제한이 있는 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참석하는가?

Yes No

연구비용을 해외기관에서 지원하는가?

Yes No

기술자료를 웹, 서버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가?

Yes No

외국인을 트레이닝 하는가? (장비 사용법, 기술, 기술 관련 데이터 등)

Yes No

- ☞ 1가지라도 Yes 인 경우, NEPS를 통해 전문판정 신청

3. 허가 예외대상 진단

- 일반에 공개된 기술 및 공개 목적인 기술
- 일반 대외적 공유를 위해 출판된 상태 / 제한 없이 구득 가능한 자료
 - 무료로 웹에서 볼 수 있는 자료 / 대중에게 공개된 라이브러리
 - 공개된 곳(컨퍼런스, 세미나)에서의 발표

Yes No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공학 등 응용과학은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교 학부 수준의 연구는 예외임, 대부분의 원자력 관련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에서 제외됨

Yes No

-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해외출원을 위해 타국가의 특허청에 기술 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등

Yes No

허가를 득한 물품 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당초 수출된 기술 또는 S/W의 기능이나 특성 향상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제외

Yes No

- ☞ 1가지라도 Yes 인 경우, 수출허가 예외

4. 허가 면제대상 진단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Yes No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 하는 경우 Yes No

☞ 1가지라도 Yes 인 경우, 수출허가 예외

5. 최종사용 용도(End-Use) 진단 (실제 기술을 이전받는 자의 목적)

WMD와 연계된 징후가 있는가? Yes No

최종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밝히길 거부하는가? Yes No

이전받는 기술이 최종사용자의 용도와 기술수준에 적합한가? Yes No

☞ 1가지라도 Yes 인 경우, NEPS를 통해 전문판정 또는 상황허가 신청

6. 최종사용자(End-User) 진단 (실제 기술을 이전받는 자)

최종사용자(국가, 회사, 개인 등)가 우려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 과거 경력까지 검토 필요, NEPS 자료실의 우려거래자목록에서 확인가능(UN 제재, 미국 제재 목록, 영국 제재 목록, 일본 제재 목록 등) Yes No

최종사용자가 해당 기술이 활용될 분야의 경력이 있는가? Yes No

최종사용자가 비규제완화국 국적의 외국인인가? Yes No

외국인 여권 이름과 사용 이름이 불일치하는가? Yes No

외국인 채용시 비밀준수서약서(NDA)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기를 거부했는가? Yes No

외국인이 습득한 기술을 재이전할 징후가 있는가? Yes No

☞ 1가지라도 Yes 인 경우, NEPS를 통해 전문판정 또는 상황허가 신청